



2016년 업무계획



---

#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창조금융이 빠르게 하겠습니다.

---

2016. 1.



금융위원회



# 목 차

I. 지난 3년간 금융정책 평가 .....	1
II. 2016년 금융정책 여건 및 방향 .....	21
III. 2016년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 .....	35
1.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	37
① 실물지원 기능 강화 .....	38
② 금융회사 변화촉진 .....	45
③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	52
④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출시 .....	58
⑤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 .....	65
2.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 .....	70
⑥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71
⑦ 한계기업·산업구조조정 추진 .....	77
⑧ 금융시장 안정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 .....	81
⑨ 서민 금융지원 확대 .....	87
⑩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91
IV. 금융위원회 일반 현황 .....	97
[첨부] 금융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추진현황 점검 .....	105



# I. 지난 3년간 금융정책 평가



# I. 지난 3년간 금융정책 방향 및 성과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금융이 창조경제의 혈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정립(『창조금융』) 모색

○ 특히, '15년 『금융개혁』을 통해 낡은 제도와 관행을 전면 정비하고 금융업의 『관』을 흔들며 경쟁과 혁신 촉진

□ 우리 경제가 성숙하고 후발주자인 신흥국의 빠른 추격 등으로 과거 투입량·외형 증대의 성장방식은 한계 직면

➔ 창의와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창조경제로의 체질전환이 절실하며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맞게 금융도 개혁 추진

□ 국정과제('13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년) 및 금융개혁('15년) 등 일관성 있는 금융정책을 통해 창조금융의 제도적 기틀 마련

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생태계 조성) 아이디어와 기술 등 가능성만으로 창업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환경 조성

■ 기술금융 도입 및 정착, 창업 및 재도전 시스템 마련, 상장·회수·M&A 등 자본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성장사다리펀드 운영 등

② (금융업의 새로운 도약) 금융권이 현실안주에서 벗어나 핀테크 육성, 신시장 개척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유도

■ 검사·제재 개혁, 법령 및 그림자 규제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보험 상품·가격 자율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서비스 등

③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지원 강화) 양적 성장에 가려져 왔던 금융소비자·서민 정책 강화 등 금융업의 질적 성숙 유도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지원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④ (금융안정 강화) 가계부채 구조개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여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 안심전환대출(32조원), 여신심사 선진화, 기업·산업 구조조정 추진 등

# 1 창조경제를 뒷받침 하는 금융생태계 조성

◆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 등 혁신적 『자금중개기능』의 시장 정착 추진

① 기업의 기술 등 창의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금지원하는  
기술금융을 은행의 중기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化

- ① TDB, TCB 등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도입('14.7)
- ② '양적 확대'에서 '질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15.6)
  - 형식적 기술금융('무늬만 기술금융')을 방지하고  
기술신용평가 기간(21.3일 → 9.8일)을 단축
  - '15년 중 28조원의 자금이 우수 기술기업에게 공급되었으며  
금리부담도 기존 대비 0.5%p 경감
- ③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 방식으로 확대
  - \* 투자형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발 및  
기술평가 기반 펀드 조성(6,570억원)을 통해 기술형 모험자본을 육성

② 성공 뿐만 아니라 실패 가능성도 높은  
창의·기술형 기업인의 창업 및 재도전 적극 지원

- ①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 확대 등  
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보증제도 운용방안 마련('15.11)
  - 창업기업 : 보증규모 확대(14.3 → 17.6조원) 및 지원 방식\* 개선
    - \* 장기보증 도입(5년이상) 및 보증비율(90%, 창업 1년 이내 100%) 상향 병행
  - 성숙기업 : 정책금융 의존을 줄이고 민간 금융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민간금융 협업 모델 구축



**② 낮은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하여 창업 및 패자부활 기회 부여**

\* '16년초부터는 연대보증인 없이도 창업할 수 있도록 신.기보의 **창업기업 (5년이내) 연대보증 전면 면제**

**③ 정책금융의 연대채무 감면(50→75%), 신복위의 원스톱 재기 지원 등 창의.기술형 기업의 재기지원 시스템\* 구축('15.10)**

\*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으로 간소화

**③ 창의.기술형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자본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육성 추진**

**① 성장사다리 펀드('15년말 4.5조원) 등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진취적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코스닥.코넥스\*를 안착**

\* 코스닥 기술상장특례가 안착(연평균 1.5개 → '15년 12개)되고 코넥스 시장의 상장사 증가 ('14년말 79 → '15년말 102개사)

**②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15.7) 마련.시행**

- 민간 투자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신기술사·조합 등 역량 있는 벤처캐피탈 육성 및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에 중점

\* KVF설립시 모태조합 의무출자 규제완화, 성장사다리펀드 LP 인센티브 강화, 창투조합 운용자 제한 규제 완화, 신기술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③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전환 등 11년만의 거래소 구조개편 추진('15.7)**

- 코스피.코스닥간 경쟁과 코스닥에 대한 독자적 운영체계를 통해 기술기업의 코스닥을 통한 자금조달.회수 기회를 확대

\* 지주회사 전환 및 IPO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15.9)

**④ 국책은행(산은, 기은)의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창의.기술형 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는 등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15.10)**

\* 기업은행은 창업.성장초기, 산업은행은 (예비)중견기업 지원에 역량 집중

## 2 금융업의 새로운 도약

◆ 금융업이 新성장 ‘산업’으로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 촉진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 『금융규제 개혁방안(‘14.7)』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지속

- 금융업 발전의 중장기 로드맵 ‘금융비전’을 제시
-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혁신위’(‘14.9~’15.2)를 통해 낡은 금융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금융혁신 방안 마련

□ 특히, ’15년중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업이 독자적 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① 금융감독과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 금융당국의 역할을 일일이 간섭하는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  
→ 검사(위규적발 → 컨설팅) 및 제재(개인→기관·금전제재) 개혁 추진
- 금융규제를 전수조사(1,064건)하여 유형화(4개)한 후 합리화 기준(7개)에 맞추어 211건의 규제를 개선

\* 유형화(4개) : 건전성, 영업행위,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 합리화기준(7개) : ① 사전 규제 → 사후 책임 강화, ② 글로벌 기준에 부합  
③ 오프라인 → 온라인, ④ 포지티브 → 네거티브, ⑤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  
⑥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⑦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 ②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에 대한 엄격한 통제절차 제도화

\* 가격 등에 대한 법령상 근거없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금지하고 내외부 통제 장치 및 위반시 인사조치 등 구속력 부여(‘16.1 시행)

\* 행정지도 건수 : (‘14년) 700여건 → (‘15년) 50건

### ③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유명무실하였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성화\*\*

\* ’15년 중 435개 금융회사 방문, 3,575건의 건의 접수, 46% 수용

\*\* (’01~’14년) 총 10건 → (’15년) 100건

□ 금융개혁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고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초기 성과가 가시화

### ① 23년만에 은행업 신규 인가 등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

- \* (인터넷전문은행) 23년만의 신규 은행 설립인가로써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을 예비인가('15.11.29)
- \* (비대면실명확인) 금융실명제 도입('93.8) 이후 처음으로 영상통화, 바이오인증(손바닥정맥, 홍채, 지문) 등 비대면방식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가능('15.12~)
- \* (계좌이동서비스) 자동이체계좌를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변경('15.10)

### ②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대출”에서 “투자” 중심의 환경 조성

- \* (만능통장 ISA) 저금리 상황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16.3 출시)
- \* (클라우드 펀딩)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탈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클라우드펀딩' 시행('16.1.25)
- \* (사모펀드 규제완화) 사모펀드 운용사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 펀드 설립 규제를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완화('15.10.25)

### ③ 22년만의 보험산업 개편

- \* (보험상품·가격 자유화) 보험상품 및 자산운용 규제를 사후·간접 규제로 전면 전환하는 규제개혁 방안 마련('15.10.16)
- \* (온라인보험슈퍼마켓) 온라인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오픈('15.11.30)

### ④ 금융과 IT 융합(Fin-tech)으로 새로운 금융모델 창출

- \* (핀테크 생태계 조성)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상담지원 276건), 자금지원(310건, 3,548억원), 금융회사 전담조직 신설(52개사), 데모데이 개최(6회) 등
- \* (핀테크 규제개선) Active X 사용의무 폐지('15.2),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15.3), 사전 보안성심의 폐지('15.6), 전자금융업 심사항목 축소(72개→62개)
- \* (빅데이터 활성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16.1.1 출범)
- \*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간편결제(삼성페이 누적 결제금액 2,500억원), 간편송금(8개사), 실물없는 모바일카드(6개사 1.8만건 발급)

###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지원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노력 지속

□ 정보유출 등 금융범죄와 시장질서 교란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 추진

① 발생한 금융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점검·보완

\* 『동양사태 재발방지 종합대책(‘13.11)』,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14.3)』,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13.12, ‘14.8, ‘14.12)』

②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⑤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15.4), 총력 대응

③ 자본시장조사단 설치(‘13.9)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15.7) 등 증권시장의 공정성 제고

□ '15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규제 체계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면 재정비(‘15.11, ‘15.12)

① 적합성 보고서\*, 소비자 피해 우려시 판매제한 등 시정조치권 도입 등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 추진

\* 투자성 상품 판매시 구매권유한 상품이 고객에 적합한 이유, 고객의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② 민원·분쟁 처리 서비스의 처리절차 정비, 전문인력 보강 등 민원·분쟁처리 개선 추진

③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공시범위 확대 등 공정한 시장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 지원

□ 금융교육 내용을 ‘지식’에서 ‘생활’중심으로 개선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15.10)

- 금융개혁의 한 축으로서 서민금융에 우선순위를 두고  
『서민금융지원강화대책』(’15.6) 등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 추진
- 국민행복기금(47.4만명), 신용회복위(127.3만명)를 통해 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 정책자금 22조원\* 공급
  - \*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 ’15년에는 기존의 지원체계를 점검·보완하고 현장·전문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한층 강화
- 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총 47만명, 약 4.7조원) 및 정책상품의 최고금리도 12%→10.5%로 1.5%p 인하
- ② 주거, 교육, 노후 대비(저소득층 실버보험) 등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다양한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 \*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1천만원→2천만원),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대출(최대 1,200만원), 저소득층 고령자 보장성 보험 지원 등
- ③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출시·운영(’15.9~)하여 서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활을 지원하고 제도금융권 이용기회 확대
  - \* 징검다리론 : 정책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공백없이 은행대출 이용
  - \* 저소득층 실버보험 :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
  - \* 미소드림적금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을 지원
- ④ 원스톱 지원체계 및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 (법률안 정무위 계류중)
-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16.1 시행예정)
  - \* 영세 가맹업자 수수료율 0.7%p 인하 등 ’16년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12년 2.06% → ’16년 1.8% 내외로 인하 예상

## 4 금융안정 강화

◆ 가계부채, 기업부실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노력 지속

① 고정·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① 안심전환대출 공급('15.3, 31.7조원, 32.7만건)

-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이 7~8%p 수준 상승  
⇒ 당초 목표를 기 달성하고 목표 재조정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 및 목표비중 상향>

구 분	'14년말	'15년말	연도별 목표치 및 조정		
			'15년말	'16년말	'17년말~
분할상환	26.5%	39.0%	25% → 35%	30% → 40%	40% → 45%
고정금리	23.6%	35.9%	25% → 35%	30% → 37.5%	40%

② 「값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추진('15.7, '15.12)

-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  
→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
- 금융기관의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  
→ 처음부터 값을 수 있는 만큼 대출 취급 유도

③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15.11 시행)

\* 담보평가의 객관성 제고 방안 마련, 토지·상가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강화 등

④ '15년중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총 4,000억원\* 추가 확충

\* 한은 2,000억('15.6.5), 추경 500억('15.8.31), 현물출자 1,500억('15.12.24)

② 비생산적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여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①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5개 산업별 구조조정 지원('15.12 방안 발표)

②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한계기업 구조조정 유도

\* '15년중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175개, 대기업 54개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③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도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 등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개선 추진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해 시장·민간 중심의 구조조정 기반 마련

- 일몰기한 연장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 추진

③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계 운영 및 시장 변동시 적기 대응

○ 금융위/원 합동 시장점검반, 기재부·한은이 참여하는 거시 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 운영

○ 시장 변동성 확대시 정확한 정보 및 시장 안정 메시지를 제공하고 『회사채 정상화 방안('13.7)』 등 시장 위축시 적기 대응

④ 은행의 바젤Ⅲ, 보험권의 연결 RBC 제도 도입 등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지속 보완

- ◆ 70개 금융개혁 과제의 제도화 및 철저한 이행·점검·보완
- ◆ 신규 금융개혁과제 발굴·추진
- ◆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 강화

### 1] (2015년 금융개혁과제 안착) 개혁과제 제도화 및 점검·보완

- √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필요 ('16.1.14. 은행연, 금투협회, 생보협회 등)
- √ 금융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만 신뢰를 확보 ('15.12, 금융개혁회의)

- 거래소 구조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위한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위해 입법적 노력을 경주

\* 주요법안 : 자본시장법(거래소개편), 대부업법(금리인하), 기촉법(일몰연장), 서민금융생활지원법(서민금융진흥원), 전자증권법(전자증권제도), 전자금융거래법(핀테크), 여전법(신기술사 자본금요건), 주금공법(법정자본금상향),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금융소비자법(소비자보호)

- 대부업법·기촉법 등 한시법 실효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구조조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공백 관리 강화

- 금융개혁 세부과제 70개가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

- i) 핀테크 기업 성공사례 지속 발굴
- ii) 빅데이터 활용 등 핀테크 영역 확대
- iii) 인터넷전문은행 IT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iv)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v) 대출이 아닌 직접투자방식의 기술금융 본격화
- vi) 코넥스 시장 등을 통한 자금 조달·회수 활성화
- vii)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조속 개정 등

② (신규 금융개혁과제 발굴·추진)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관행 개선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추진

√ 핀테크 관련 향후 과제 ('15.11)



√ 보험다모아에서 조회한 자동차 보험료가 실제 보험료와 상이 ('16.1.12, 정책수요 간담회)

√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 성공사례 출현 미흡 ('15.11, 핀테크 간담회)

- i) 클라우드 펀딩 시행
- ii)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
- iii) 계좌이동서비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확대
- iv)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확대
- v) 보험다모아 기능 확대
- vi)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기반 자문서비스 출시
- vii) 창조경제·문화융성 등 미래먹거리 산업에 정책금융 중점 공급
- viii) 업권간 업무영역 조정 등

③ (금융감독당국) 일관성 있는 개혁 추진을 통해 시장과 금융회사의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필요

√ 검사·제재 개혁 등 바뀐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어 체감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추가적인 소통노력이 필요 ('15.11, FGI)

√ 금융개혁의 주요 불만족요인으로 '금융당국 실무자의 바뀌지 않는 태도(41.7%)'로 평가 ('15.12, 서베이)

- 금융당국의 역할을 '심판'으로 확고히 정착 필요
-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통한 금융감독기관의 확실한 행태 변화
  - 외부기관을 통해 감독관행 개선 관련 실태평가를 통해 점검
- 금융현장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필요

④ (금융회사)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필요

√ 핀테크에 대한 금융규제는 거의 다 풀렸어요. 이제 핀테크 산업이 크려면 금융회사가 전담창구를 갖추어 핀테크 기업과 적극 소통해야 합니다. ('16.1, 수요자 간담회)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확립여부\*에 대해 금융회사 이외의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미흡하다는 평가 ('15.6, '15.12, 서베이)

-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보수·교육·평가 등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 유도
- 확고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에 기반하여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제도 및 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⑤ (금융시장)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 필요

√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일시상환·변동금리 구조, 꼭 바뀌야 합니다. ('16.1.7, 리스크 점검 간담회)

√ 돈을 벌어도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빨리 정리해야 경제에 돈이 제대로 흐릅니다. ('15.12.22, 기업부채 연구 포럼)

√ 예측된 위기는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 대응하는게 중요합니다. ('16.1.7, 리스크 점검 간담회)

- 가계부채 관리는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주거 관련 비용을 완화
- 상시·선제적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 불안을 조기 해소
-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 노력 지속

⑥ (서민지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한층 강화할 필요

√ 경제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고통받는 저신용 서민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15.12.28, 대구 통합지원센터 현장방문)

√ 금융개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회사 자율성이 높아지면 자칫 금융소비자가 소외될 수 있습니다. ('15.12.16, 소비자패널 회의)

-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자활과 재기를 적극 지원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

	창조경제 뒷받침	금융업 재도약	금융소비자 서민지원	금융시스템 안정	
'13. 上	제2금융권 연대보증폐지(4월)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5월)	국민행복기금 추진(3월)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1월)	
	은행,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확대(5월)		금융교육 종합포털 개통(6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6월)	
	성장사다리펀드 활용방안(5월)				
'13. 下	정책금융역할 재정립(8월)	클라우드펀딩 도입 추진(9월)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9월)	회사채시장 정상화(7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12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9월)	은행·은행지주 바젤III자본규제(8월)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12월)	증권사 M&A추진(12월)	불공정거래 근절대책(9월)	기업부실 사전방지(11월)	
			동양 유사사례 재발방지(11월)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대책(12월)		
	<b>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1월)</b>				
'14. 上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1월)	공동검사 개선(1월)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3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2월)	
	기업상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4월)	소득공제장기펀드 ·하이일드펀드 출시계획(1월)		증권사 NCR 제도개선(4월)	
'14. 下	<b>금융규제 개혁방안(7월)</b>				
	<b>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8월)</b>				
	전자상거래결제 간편화·활성화 (7월)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7월)	보험사기 근절(7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8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7월)	지배구조 모범규준 (12월)	
	<b>금융혁신위원회 운영(9월~)</b> ①제재관행 개선    ②적극금융행정 ③은행 혁신성평가    ④은행 내부관행 개선 ⑤행정지도 전면 재검토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2월)	불법차명거래금지 (11월)	
	IT·금융 융합협의체(11월)		상호금융 가계부채 대응방향(12월)		

창조경제 뒷받침	금융업 재도약	금융소비자 서민지원	금융시스템 안정
-------------	------------	---------------	-------------

'15. 上	<b>금융개혁 추진방향(3월)</b>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3.30)	금융규제민원 포털 오픈 (3.31)	안심전환대출 (3.22)	
	핀테크 지원협의체 출범(4.14)			금융보안원 설립 허가 (3.31)
	<b>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4월)</b>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5.6)	자본시장 개혁방안 (4.23)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4.27)	
	기술금융 체계화 및 개도개선(6.8)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합리화 방안(5.18)	통합연금포탈 오픈(6.11)	
	보험업 인가정책 개선(5.26)			
	<b>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6월)</b>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6.18)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6.23)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6.19)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7.20)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7.2)	계좌이동서비스 1단계 개시(7.1)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7.22)
클라우드펀딩법 도입(7.23)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방안(7.16)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 도입(8.6)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7.31)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8.27)	은행 자율성· 책임성 제고방안(8.13)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10.14)	그림자규제 개선방안(9.18)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9.10)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운영 방안 (10.22)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10.14)		금융소비자 교육 강화 방안(10.15)		
기은·산은 역할 강화 방안(11.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0.19)		건전성규제 선진화 방안 (10.29)	
중소기업 新보증체계 구축(11.4)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방안 확정(11.2)	
영업행위 규제 개혁 방안 (12.3)		계좌이동서비스 2단계 개시(10.30)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12.10)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11.29)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11.2)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12.1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11.29)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강화방안(12.16)			
연금자산 효율적 관리방안(12.21)				

'15.  
下

# 참 고

# 금융개혁 70개 실천과제 추진현황

추진단계 : ● 제도개선완료 시행중(31) ○ 방안발표, 일부시행(17) △ 방안발표, 제도개선 중(15) √ 방안마련 중(7)

번호	과제명	추진현황	추진단계
<b>1</b>	<b>감독·검사·제재 개선 (코치 → 심판)</b>		
1-①	금융위·금감원간 역할 정립	실행방안 확정 (7월)	●
1-②	컨설팅 검사 정착	검사·제재 개혁방안 (4.22)	●
1-③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	제재개혁 추진방안 (9.2)	○
<b>2</b>	<b>시장기능 존중 (금융소비자 보호 여건 성숙 전제)</b>		
2-①	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8.13)	●
2-②	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	비교공시 강화방안 (7.27)	●
2-③	금융교육 강화	강화방안 (10.15)	○
2-④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역할 강화방안 (9.10)	○
<b>3</b>	<b>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b>		
3-①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점검반 출범 (3.26)	●
3-②	유권해석 및 No Action Letter 활성화	운영규칙 개정 (12.2)	●
3-③	금융규제민원포털 운영	포털 오픈 (3.31)	●
<b>4</b>	<b>보수적 관행혁신</b>		
4-①	은행 혁신성평가 개선	개선방안 (7.9)	●
4-②	20대 금융관행 개선	20대 과제 (11.16)	○
4-③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도입방안 (9.16)	△
4-④	금융권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
<b>5</b>	<b>금융사 자율책임 정착</b>		
5-①	금융사고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8.13)	●
5-②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 노력	△
5-③	금융 윤리규범 정립	12월 완료	●
5-④	금융의 날 제정	행자부와 협의중	√
5-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도입방안 (7.6)	△
5-⑥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16년초 추진	√
<b>6</b>	<b>창의적 금융 우대</b>		
6-①	금융회사내 제재·면책시스템 점검·개선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8.13)	●
6-②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지속 추진	√
<b>7</b>	<b>기술금융 실태조사 및 질적성장 유도</b>		
7-①	기술금융 실태조사 및 시스템 개선	기술금융 개선방안 (6.8)	○
7-②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강화방안 (11.4)	△
7-③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강화방안 (10.30)	△
<b>8</b>	<b>기술금융 규모 확대 및 투자 활성화</b>		
8-①	기술신용대출 규모확대	기술금융 로드맵 (8.27)	●
8-②	기술가치평가 기반 투자 활성화	IP펀드조성(6.29)	●
<b>9</b>	<b>기술금융 전문역량 확충</b>		
9-①	금융회사의 기술금융 역량 배양	전문 교육과정 실시 (8.18)	●
9-②	기술신용 평가 인프라 고도화	기술금융 개선방안 (6.8)	○
<b>10</b>	<b>거래소 구조개혁</b>		
10-①	코넥스 시장 활성화	활성화 방안 (4.23)	●
10-②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활성화 방안 (4.23)	●
10-③	거래소시장간 경쟁 강화	경쟁력 강화방안 (7.2)	△
10-④	전자증권제도 도입	도입방안 (5.21)	△
10-⑤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규제선진화 방안 (6.1)	○

번호	과제명	추진현황	추진단계
<b>11</b>	<b>사모펀드·모험자본 획기적 육성</b>		
11-①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	강화방안 (4.23)	●
11-②	벤처투자 활성화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7.20)	○
11-③	클라우드 펀딩 도입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예고(7.23)	●
11-④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강화방안 (10.14)	△
11-⑤	스튜어드쉽코드 제정	'16년초 추진	√
<b>12</b>	<b>국가자산·민간금융간 시너지 창출</b>		
12-①	자산운용 협의체널 마련	연금자산관리방안(12.21)	△
12-②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연금자산관리방안(12.21)	△
<b>13</b>	<b>핀테크 생태계 구축</b>		
13-①	핀테크 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협의체 출범 (4.14)	●
13-②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핀테크지원센터 개소 (3.30)	●
13-③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확립방안 발표 (6.19)	●
13-④	전자금융법령 전면정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7.7)	△
13-⑤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	위탁규정 개정안 시행 (7.22)	●
<b>14</b>	<b>인터넷 전문은행 도입</b>		
14-①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마련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5.18)	●
14-②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도입방안 발표 (6.18)	●
<b>15</b>	<b>빅데이터 활성화</b>		
15-①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6.3)	△
15-②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	'16.1.1일 출범	●
<b>16</b>	<b>금융규제 유형화·개선</b>		
16-①	그림자규제 개선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9.18)	○
16-②	건전성규제 합리화	선진화 방안 (10.29)	○
16-③	영업행위 규제 개선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12.3)	○
16-④	소비자보호 규제 개선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12.16)	△
16-⑤	시장질서 규제 개선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12.10)	△
16-⑥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국무총리 훈령 '16.1.4일 시행	●
<b>17</b>	<b>칸막이 규제 완화</b>		
17-①	복합점포 활성화	추진방안 (7.3)	●
17-②	보험 판매채널 정비(온라인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오픈 (11.30)	●
17-③	보험업 진입·인가 기준 완화	인가정책 개선방향 (5.26)	●
17-④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경쟁력 강화방안 (6.22)	●
17-⑤	보험업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 로드맵(10.19)	○
17-⑥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16년중 추진	√
17-⑦	증권·보험 지급결제참여 확대	지속 검토	√
<b>18</b>	<b>신상품·신영역 개척 지원</b>		
18-①	금융세제 개선안 마련 (중장기 포함)	세제개편안 완료	○
18-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세제개편안 국회통과(12.2)	△
18-③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개시	2단계 서비스 개시 (10.30)	●
18-④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금융권 역량강화	활성화 지원방안 (7.16)	○
18-⑤	해외 SOC 사업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해외SOC펀드 출범 (8.17)	○
18-⑥	외환제도·규제 개선	외환제도 개혁방안 (6.29)	○
18-⑦	100세시대 대비 상품개발	통합연금포털 오픈 (6.11)	○

**참 고**

**2015년 현장점검단 현장방문 성과**

□ ‘15.4.2 최초 현장방문 이후 35주차(‘15.12.22)까지 435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총 3,641건의 건의사항 접수

○ 28주차까지 접수된 3,163건 중 현장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2,354건\*(수용률 45.5%) 회신

\* 수용 : 1,071건, 불수용 : 748건, 추가검토 : 535건

□ 권역별로 보험이 1,190건(32.68%)으로 가장 많고, 비은행 1,046건(28.73%), 금융투자 885건(24.31%), 은행지주 520건(14.28%) 順

(단위 : 건, %)

구 분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 계
건 수	520	1,190	885	1,046	3,641
구성비	14.28	32.68	24.31	28.73	100

○ 보험업권의 경우 타 권역대비 금융상품·광고(보험료 조건, 약관심사), 자산건전성(자기자본비율),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방법) 관련 건의가 많았던 것이 고빈도의 원인

□ 시기별로 첫 1~4주 방문 이후 중복건의 발생 등으로 업체당 건의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견조한 건의 수요를 보임

(단위 : 건, 개)

구 분	은행·지주 (방문회사)	보험 (방문회사)	금융투자 (방문회사)	비은행 (방문회사)	합 계	업체당 건의건수
1~4주	127(5)	214(7)	229(6)	169(13)	739(31)	23.8
5~8주	137(6)	217(18)	135(5)	197(40)	686(69)	9.9
9~12주	110(5)	201(9)	93(12)	103(20)	507(46)	11.0
13~16주	66(4)	128(7)	129(8)	144(32)	467(51)	9.2
17~20주	46(5)	70(5)	40(4)	90(4)	246(18)	13.7
21~24주	7(1)	94(6)	83(4)	58(6)	242(17)	14.2
25~28주	6(5)	81(8)	89(11)	104(25)	280(49)	5.7
29~32주	7(4)	125(15)	64(5)	110(48)	306(72)	4.3
33~35주	14(7)	62(5)	25(26)	71(44)	172(82)	2.1
합 계	520(42)	1,190(80)	885(81)	1,046(232)	3,641(435)	8.4

○ 특히, 부문별 심층점검\*, 대상 확대\*\* 등 방식 다양화 모색이 신규과제 발굴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 17주차(비조치의견서 테마점검), 22주차(상장회사협의회 현장점검)

\*\* 중소·벤처기업, 상장(준비)기업(15.10), 금융소비자(15.11) 등 대상 확대

- **회신유형별로 회신 건 전체(2,354건)에 대한 수용률은 45.5%**이며, 은행 58.0%, 보험 47.5%, 비은행 42.2%, 금융투자 40.6% 順

(단위 : 건, %)

구 분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 계
수용	159(58.0)	398(47.5)	267(40.6)	247(42.2)	1,071(45.5)
불수용	78(28.5)	250(29.8)	219(33.3)	201(34.4)	748(31.8)
추가검토	37(13.5)	190(22.7)	171(26.0)	137(23.4)	535(22.7)
합 계	274(100)	838(100)	657(100)	585(100)	2,354(100)

- 금융투자업권은 과다 차입 방지 및 투자자보호, 비은행업권은 서민층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이유로 높은 불수용률을 기록
- 불수용·추가검토 과제 中 중복건의의 경우 비은행업권이 각각 37건·2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8주차 기준)

(단위 : 건)

구 분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 계
불수용	11	2	7	37	57
추가검토	1	12	13	24	50

- 비은행업은 ‘LTV 비율 일원화\*’등으로 인한 타 업권과 경쟁 격화 및 영업상의 애로 가중 등이 중복건의의 주요 원인

\* 비은행업 상호신용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 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상향 조정”은 전 업권을 통틀어 **최다 중복(12회)된 과제**

-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은 총 225건으로, 금융투자업권이 가장 많고(총 82건), 은행업권은 상대적으로 적은(11건) 수준

(단위 : 건)

구 분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 계
법령해석	9	40	61	33	143
비조치의견서	2	30	21	29	82
합 계	11	70	82	62	225

- 업권별 소관 법령\*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통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14건)」 관련 요청이 다수

\* 보험(보험업법), 금투(자본시장법), 비은행(여신전문금융업)

## Ⅱ. 2016년 금융정책 여건 및 방향

1. 2016년 금융정책 여건

2. 2016년 금융정책 방향



# 1. 2016년 금융정책 여건

## 1 해외 여건

□ 세계경제는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추가적 경기부양책 등으로 완만한 성장 예상

\* 세계 성장률 전망(IMF) : ('14) 3.4% → ('15) 3.1% → ('16) 3.4%

○ '15년중 선진국 회복 지연, 낮은 원자재 가격 및 세계교역 감소에 따른 신흥국 부진 등으로 성장 약화

\* '15년중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변화(IMF) : ('15.4)3.5% → ('15.10) 3.1%

○ '16년에도 미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등으로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

\* 세계 실질성장 기여도(%), 선진국/신흥국, Economist) : ('13)30/47 → ('16<sup>e</sup>)43/34

□ 주요 선진국간 통화정책 차별화(Great Divergence)와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부진은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

○ (美금리인상) '15.12월 기준금리인상 이후, 추가 인상속도\* 및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 '16년 금리인상 전망 : (FOMC) 25bp씩 4회 vs. (IB 예상) 25bp씩 3회

\*\* (ECB) QE시한 연장 및 은행 초과기준 예치금리 10bp 인하('15.12.3)

○ (中경기둔화) 中 성장세 둔화 및 구조개혁(투자·수출 → 내수) 등은 경제 연관성이 높은 신흥국 성장의 하방요인

\* 성장전략 전환 성공 → 中산업 고도화 → 對中 중간재 수출 위축

\* 성장전략 전환 실패 → 中경제 경착륙 → 신흥국 전반에 충격

○ (신흥국 경제불안) 저유가 등 원자재 가격 회복 지연, 기업 부채 증가, 외국인 자금 이탈 등에 따라 금융불안 심화 가능성

\* 기업부문 국제채권 발행잔액('08→'15.9, 억달러, BIS)

: (中)257→2,750 (브라질)370→1,540 (남아공)94→263 (러시아)620→1,001

## 2 국내 여건

□ '16년 국내경제는 저금리·저유가 등에 힘입은 내수여건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 회복 전망

\* 정부(3.1%), KDI(3.0%), BOK(3.0%), IMF(3.2%), OECD(3.1%) 등

○ 다만, 국제교역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 제약\*\* 등이 경기회복의 하방위험으로 작용

\* 수출증가율(통관)(전년비,%) : ('13)2.1 ('14)2.3 ('15)△8.0

\*\* 실질가계소득(전년동기비,%) : ('14.3Q)1.6 (4Q)1.4 ('15.1Q)2.0 (2Q)2.3 (3Q)0.0

□ 대외불안이 국내로 전이될 수 있는 대내 리스크 요인도 상존

○ (부채 리스크)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와 기업실적 부진 속에 시장금리 상승시 상환부담\*\* 확대 등 불안요인으로 작용

\* 가계대출 증가율 : ('12) 5.2% → ('13) 6.0% → ('14) 6.7% → ('15.9) 10.4%

\*\* 금리 0.25%p 상승시 가계 이자부담은 연 1.7조원 수준 증가 추정

○ (외인자금) 美 금리 인상 후 글로벌 자금이동 과정에서 안전 자산 선호 확대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

\* 外人 투자자금 순유입(조원) : ('15.8)△4.2 (9)△2.8 (10)0.7 (11)△1.1 (12)△3.9

○ (금융산업 여건) 경쟁강도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금융권에 대한 신뢰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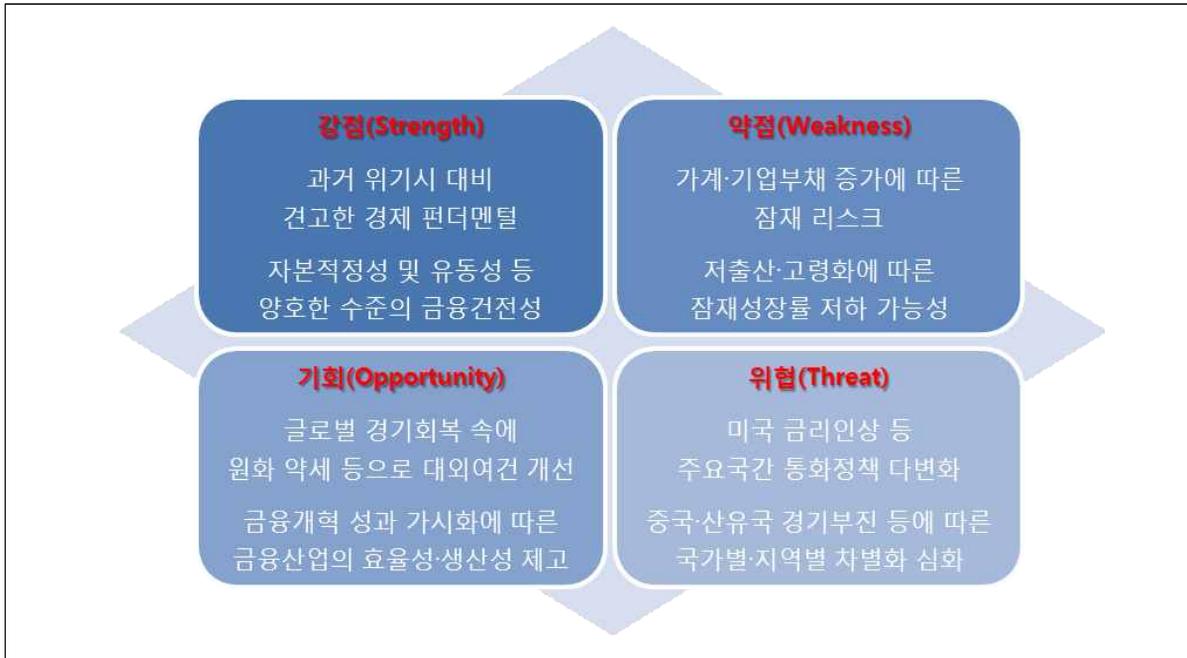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 서비스, 핀테크 플레이어의 출현,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 보장 등

\*\* 불편·부당한 금융관행, 신종 금융사기 등

➔ 대외 불안요인이 전이되어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를 선제적 관리

**참 고**

**우리나라 경제·금융여건 SWOT 분석**



□ 대내외여건 측면에서 강점(Strength) 및 약점(Weakness) 요인

- (강점) 경상수지 흑자, 양호한 정부부채 수준, 대외채무 구조, 금융시스템 안정성 개선 등 견고한 경제 펀더멘탈 유지

\*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AA3→AA2, 무디스, '15.12)

- (약점) 가계부채 증가, 한계기업 누적 등에 따른 부채 리스크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 대내외여건 측면에서 기회(Opportunity) 및 위협(Threat) 요인

- (기회)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日·EU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 개선 기대

- 특히,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는 금융개혁 성과가 가시화되면, 금융산업의 생산성·효율성도 제고될 전망

- (위협) 미국 금리인상을 비롯한 주요국간 통화정책 다변화, 중국 및 산유국의 경기부진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참 고**

**2015년 주요정책 對 국민 서베이 결과**

◆ '16년도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해 일반국민(700명) 및 전문가집단(1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갤럽, '15.12)

※ '15년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해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 서베이('14.12)

※ 금융개혁 100일 성과점검을 위해 **전문가 집단** 서베이 실시('15.6)

**1 금융개혁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 (인지도) 일반인·전문가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인지

\* 금융개혁과제 8개 중 4개 이상 인지 : 일반인 68.7%, 전문가 94.8%  
(계좌이동서비스, 핀테크, 클라우드펀딩, 고가차량 보험료개선, 기술금융,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그놈 목소리 공개, 휴면예금 주인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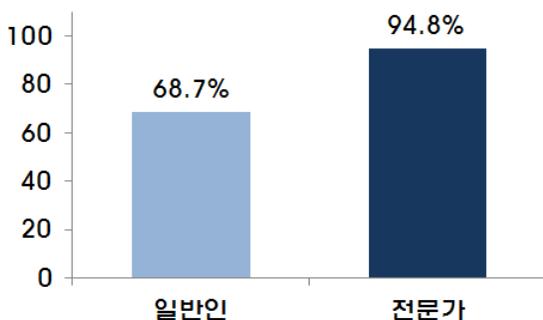
□ (금융당국의 노력) 전문가는 일반인보다 금융당국의 노력에 대해 2배 정도 높게 평가

○ 전문가는 지난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80%)와 유사하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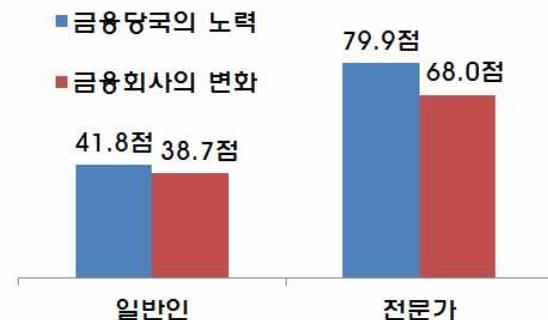
□ (금융회사의 변화) 일반인·전문가 모두 금융당국의 노력보다 금융회사의 변화를 낮게 평가

○ 다만, 전문가는 지난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보다 금융회사 변화 노력을 높게 평가 ('그렇다' 이상 56.4%→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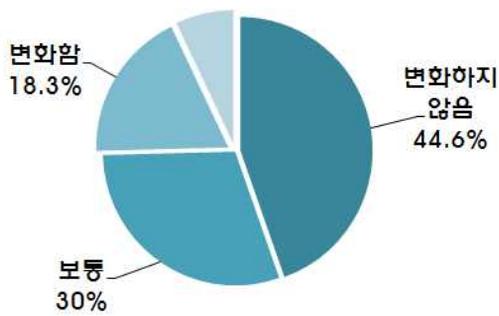
<금융개혁과제 4개 이상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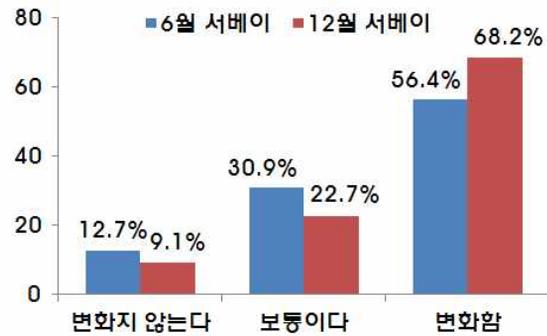
<금융당국 노력과 금융회사 변화>



<금융회사 변화 - 일반인>



<금융회사 변화 -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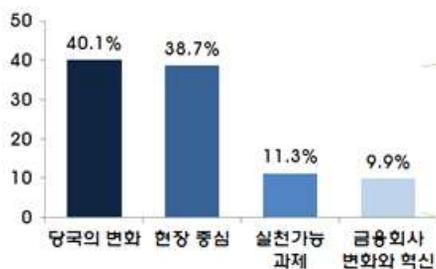
□ (만족도) 전문가는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83.6%) 보다 만족도(92.2%)가 크게 상승

○ 100일 서베이와 달리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40.1%)를 만족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

\* 100일 서베이 만족도 : 현장점검반 중심(46.7%), 금융당국의 변화(28.3%)

○ 불만족의 주요 요인도 ‘금융당국 실무자의 바뀌지 않는 태도’ (41.7%)로 평가되어 실무자의 태도 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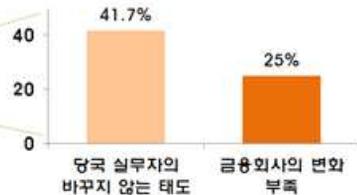
<만족하는 이유>



<금융개혁 만족도>



<불만족 이유>



○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기능 확립 여부는 지난 6월 조사보다 낮게 평가됨 (‘그렇다’이상 답변 56.4% → 50.6%)



\* '그렇다' 이상(%) : (금융회사) 66.7, (금융협회) 61.8  
 <-> (학계) 16.1, (일반회사)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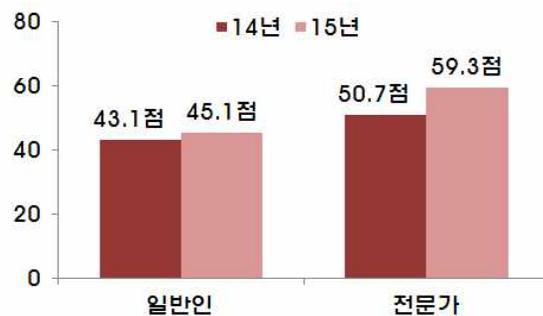
□ (전반적 금융인식) 금융 서비스 품질개선, 신뢰도, 편의성 등에 대해 전문가(60~70점)는 일반인(40~50점)보다 높게 평가

- '14년과 비교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도는 전문가 집단에서 크게 향상되었으며, 금융회사 신뢰성은 일반인, 전문가 모두 상승
  - 정부의 소비자보호 노력도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전문가는 2배 이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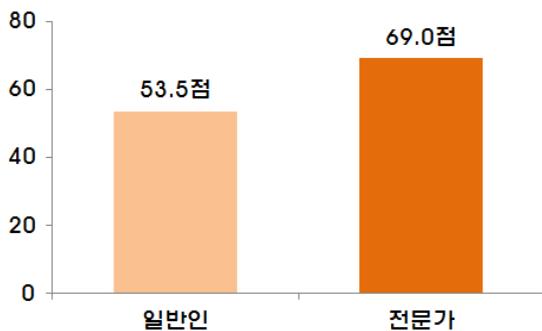
<금융회사 서비스 품질 향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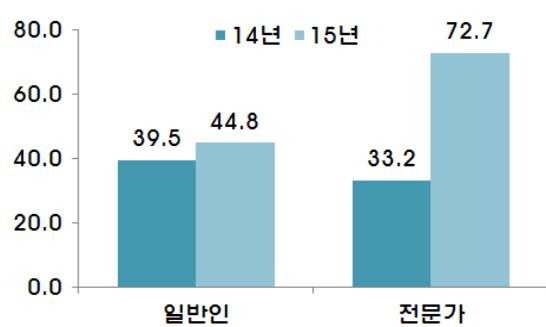
<금융회사 서비스 신뢰성>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정부의 소비자보호 노력정도>



➔ 금융개혁의 최종 대상자인 일반인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서비스 혁신과 신뢰성 제고 노력 절실

## 2 2016년 추진과제 (전문가 대상)

### □ 중점 추진과제

- 금융권 정책고객(금융사·협회 등)과 비금융권 정책고객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으로 선정
- 금융업권은 여전히 금융규제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

\* 2014년 조사시 금융권 결과 : 금융규제 개혁(59.3%),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금융안정 (44.2%)

순위	중점 추진과제	응답률(%)	응답률(%)	
			금융업권	비금융업권
1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등 금융안정	44.8	39.4	54.5
2	금융규제개혁	18.2	26.3	3.6
3	기업구조조정	9.7	8.1	12.7
4	금융·IT 융합 등 핀테크 활성화	9.7	8.1	12.7
5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5.8	4.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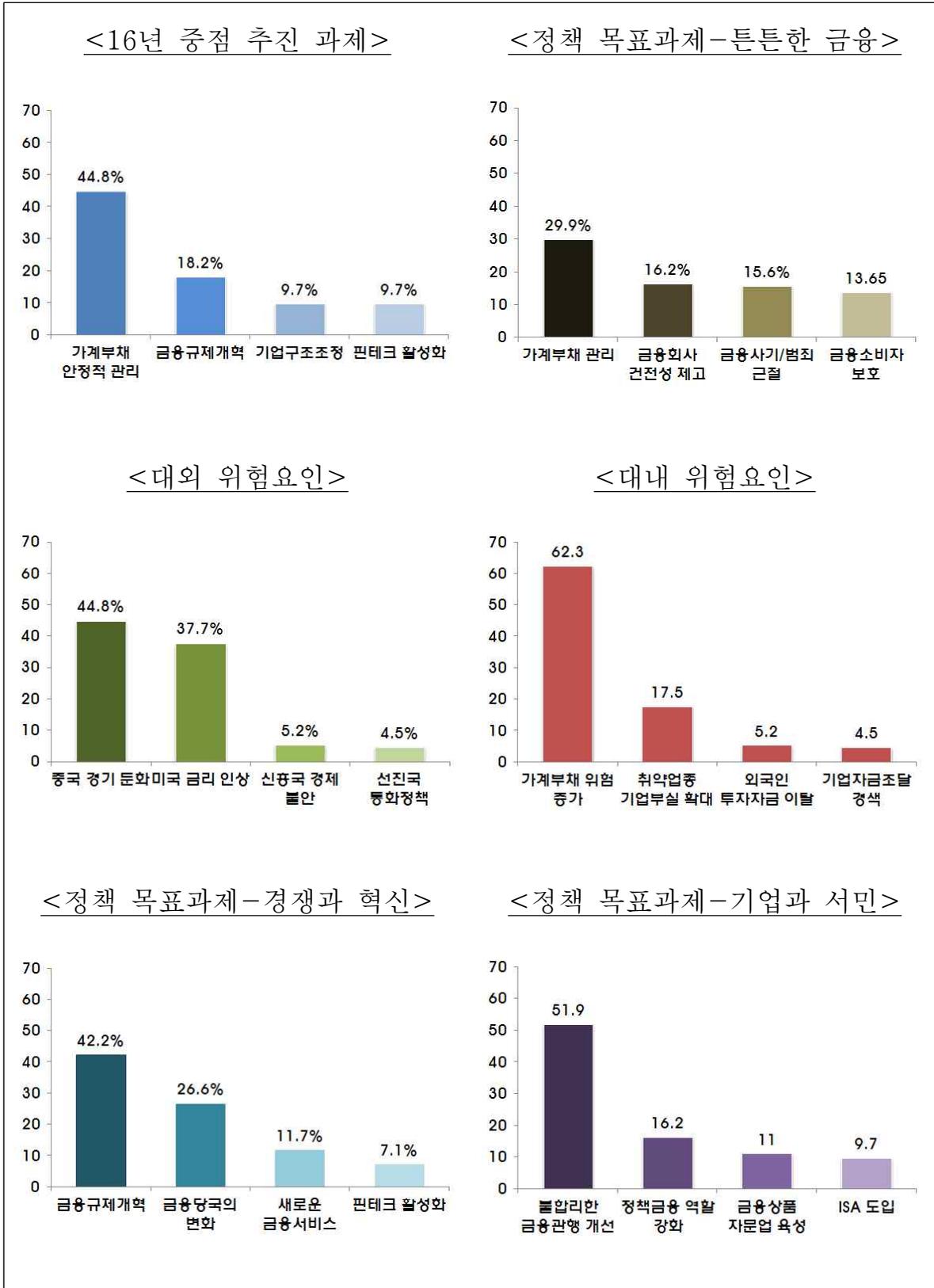
### □ 주요 위험 요인

- (대외) 중국경기 둔화, 미국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불안 등
- (대내) 가계부채 위험 증가, 취약업종 기업부실 확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

### □ 정책 목표별 핵심과제

- (금융 안정) 가계부채 관리 →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 금융사기·범죄 근절 → 금융소비자 보호 順
- (경쟁과 혁신) 금융규제개혁 → 금융당국의 변화 →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 → 핀테크 활성화 順
- (기업과 서민)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정책금융 역할 강화 → 금융상품 자문업 육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順

【 주요 과제별 설문조사 결과 】



**참 고**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수요자 간담회 결과**

**1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간담회**

- ◆ 일시/장소 : '16.1.7(목) 08:00~09: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담당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소보처장 등
  - 정책수요자 12人 (금융시장,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소비자 보호)

- 커버드본드 등 장기채 공급 확대, 연기금의 역할 강화 등 채권 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 및 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력 지속
- 부동산 경기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추진
- 기업구조조정을 부처간 협업으로 산업정책과 연계(새로운 먹거리)
- '15.12월 마련한 소비자보호방안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지속 관심
- 청소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2 금융개혁 정책수요자 간담회**

- ◆ 일시/장소 : '16.1.12(화) 08:00~09: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담당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정책수요자 12人 (자본시장, 핀테크, 정책금융, 금융문화혁신)

- 클라우드펀딩으로 제조업·문화콘텐츠·지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
-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비식별정보' 이용 제약요인 해소필요
- 기술력 있는 기업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 필요
-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 추진 필요

## 2. 2016년 금융정책 방향

-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한층 더 높이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강화
    - 경쟁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의 혈액 기능을 강화
    -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 대응으로 대응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와 회계부정을 근절하여 시장질서 확립
- ⇒ 분야별로 2대 핵심과제 및 10개 실천계획을 현장 중심, 지속 점검·보완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 【 핵심과제 1.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

- ① 실물지원 기능 강화
- ② 금융회사 변화 촉진
- ③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 ④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출시
- ⑤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

### 【 핵심과제 2.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 】

- ⑥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⑦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추진
- ⑧ 금융시장 안정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
- ⑨ 서민금융 지원 확대
- ⑩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 < 2016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현장중심, 지속 점검·보완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창조금융이 빠르게 하겠습니다.**

**참 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금융위 업무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6년 업무계획	비전
<p><b>역동적인 혁신경제</b></p> <p>미래대비 투자</p> <p>창조경제 구현</p> <p>해외진출 촉진</p>	<p><b>[핵심과제1 :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b>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p> <p>① 실물지원기능 강화</p> <p>② 금융회사 변화촉진</p> <p>③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p> <p>④ 혁신적 상품·서비스 출시</p>	<p>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 하겠습니다.</p>
<p><b>기초가 튼튼한 경제</b></p> <p>사회안전망확충</p> <p>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p>	<p><b>[핵심과제2 :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b> 국내외 취약요인을 선제적·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p> <p>⑥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p> <p>⑦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추진</p> <p>⑧ 금융시장 안정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p>	
<p><b>내수·수출 균형경제</b></p> <p>투자여건 확충</p> <p>내수(소비) 기반 확대</p>	<p><b>[핵심과제2 :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b> 서민·금융소비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p> <p>⑨ 서민 금융지원 확대</p> <p>⑩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p> <p>⑤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p>	

### Ⅲ. 2016년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

1.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2.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



# 1.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 〈 기본 방향 〉

- ◆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역동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
-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
- 성과주의문화 확산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변화 촉진
- 핀테크산업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 온라인 기반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 자문서비스 활성화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확대 기회 제공

### ■ [핵심과제①] 실물지원 기능 강화

- 가. 기술금융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
- 나. 크라우드펀딩, 거래소개편 등 자본시장 활성화
- 다.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및 지원체계·인식·관행 개선

### ■ [핵심과제②] 금융회사 변화촉진

- 가. 금융감독·검사·규제 지속개선으로 금융회사 자율 확대
- 나. 금융회사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확산 유도
- 다. 엄격한 직업윤리를 기반으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 [핵심과제③]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 가. 핀테크 해외진출 등 글로벌 핀테크 강국으로의 도약
- 나. 보험상품·가격 자율화 등 보험규제 전면 개편
- 다.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글로벌 IB 출현 지원
- 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 ■ [핵심과제④] 혁신적 상품·서비스 출시

- 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확대
- 나. 새로운 DNA를 지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 다. 비식별정보 활용 제약요인 해소를 통한 빅데이터 활성화

### ■ [핵심과제⑤]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

- 가. 온라인 자문업 도입 등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품질 제고
- 나. ISA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판매채널 확대
- 다.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 강화

**핵심과제 ①**

**실물지원 기능 강화**

**가 기술금융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

◆ `16년을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아, 우수 기술기업이 대출 뿐만 아니라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이 가능한 금융여건 조성

① (기술금융 투자 확대) 정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기반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

\* `15년 중 공급된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 27.9조원

○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용

\*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의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위.산업부가 공동 개발(`15.12)

\*\*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4,510억원 기초성), 지식재산권 투자펀드(2,060억원 기초성), 기술금융 펀드(1,000억원, `16년 조성계획)

○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내 “기술기반 투자” 평가\*를 신설(10%)하여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

\* 투자용 기술평가 및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를 실적으로 집계

② (기술금융 대출 정착)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통해 여신관행 내 기술금융의 조속한 내재화 및 항구적인 정착을 도모

○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 확대 및 연간 20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기술신용대출 공급 기반 마련

③ (비금융 경영지원 실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과 연계\*하여 우수 기술기업(약 2,500개)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컨설팅 지원

\* (파이낸스 존) 컨설팅 필요기업 선정 → (정책금융기관) 세무.회계.법률 등 컨설팅 지원

## 나 크라우드펀딩, 거래소개편 등 자본시장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하도록 크라우드펀딩 시행, 거래소 개편, 코넥스 활성화 등 추진

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IT, 신기술, 문화예술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속히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시행('16.1.25)

-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도를 소개하고, 등록 중개업자 사이트와 연결하여 투자가 가능한 대국민 안내사이트 오픈('16.1)
- 크라우드펀딩 혜택을 받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크라우드펀딩 매칭펀드 조성('16.1/4)
- 크라우드펀딩 출자지분을 K-OTC BB 거래대상에 포함하여 투자자가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16.1/4)

② (기업 투자정보 마당 구축) 혁신센터·정책금융기관의 우수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 구축('16.1)

-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정보를 '기업 투자정보 마당'에 등재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간 연계 강화

\* 이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1천개 이상 기업을 정책금융기관이 추천

- 투자마당내 기업 정보는 외국의 투자정보 플랫폼(예: 엔젤리스트\*)에도 제공함으로써 해외 투자자금도 적극 유치

\* 창업기업과 엔젤 등 투자자간 투자매칭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약 74만개 기업정보와 4.8만명 투자자 등록, 국내기업은 20개社 등록)

- 특히, 해외 투자자(VC) 유치를 위해 투자마당내 기업정보는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선별된 유망 업체는 글로벌 IR\* 지원

\* 국내기업의 SNS(Startup Nations Summit) 등 글로벌 창업자 경진대회, 현지 투자IR쇼 참가 지원: 영문IR 자료 작성지원, 항공료 지원 등

③ (거래소 개편) 거래소의 지주 체제 전환을 통해 코스닥·코넥스 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후 지주회사 전환 및 상장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장차익 처리방안 등 전제조건을 검토
- 거래소지주회사 IPO시 각 시장 자회사의 시장감시 기능은 별도로 분리된 비영리 법인(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하여 운용
  - 시장감시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장감시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시장감시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공적 통제\*를 유지
- \* 시장감시위원을 공적기관에서 추천, 시장감시위원장에 대한 금융위의 해임요구권, 시장감시규정 변경시 금융위 승인, 금융위의 감독 및 조치 권한
- 중장기적으로 ATS 규제완화, 장외거래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거래소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자본시장 구조를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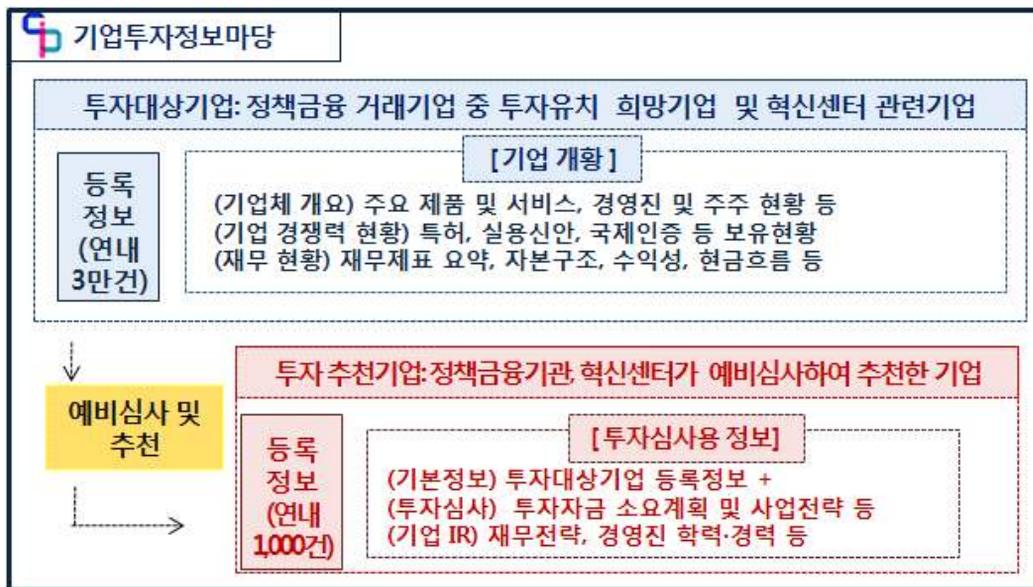
④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코스닥·코넥스 제도개선, M&A 중개망 구축 등을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정착

- 코스닥 신규상장 기회 확대,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확대 등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거래소 내 M&A 중개망 구축을 통해 M&A 희망기업,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 등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
-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지원을 위해 코넥스시장 기업 분석보고서 발간지원(KRP) 사업 강화
-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 제공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루어진 창업이 중장기적으로 상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강화

**참고**      **크라우드펀딩 제도·기업투자정보마당**

- (제도 개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16.1.25 시행)
  -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수행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투자자 보호) 투자위험이 높은 온라인 소액투자 허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능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 투자자가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
    - \* 일반투자자 : 연간 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 등 투자자별 차등화
  -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7억원까지 모집 가능
  - 2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1년간 매도 금지
  - 청약금액이 목표금액의 80% 이하인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
  -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발행기업이 인터넷에 게재
- (기업투자정보마당) 혁신센터 등 유망 기업정보 집중을 위한 플랫폼인 기업투자정보마당(ciiip.or.kr)을 마련 → 중개업자에 우수기업 발굴 및 자금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기업 투자정보 마당의 기업정보 지원대상 및 지원정보 >



## 다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및 지원체계 · 인식 · 관행 개선

◆ 창의·혁신형 기업의 창업·성장 촉진을 위해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 ① (기은·산은 역할 재편)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역량을 집중
  - 기업은행은 창업·성장초기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000여개 기업에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 지원
    - \* 창업성장초기 지원 확대(조원) : ('15) 9.5 → ('16) 11 ['18년 목표 15조원]
  - 산업은행은 예비중견·중견기업의 발굴 육성을 강화하고, 예비중견 기업의 특성에 맞춘 성장지원프로그램을 확대
    - \* 중견·예비중견기업 지원 확대(조원) : ('15) 24.5 → ('16) 26 ['18년 목표 30조원]
- ② (보증체계 개편)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보증체계 도입
  - 창업 5년이내의 기업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 창업·성장초기 기업 보증공급 확대로 데스벨리 극복 지원
  - 보증연계 투자, 투자옵션부 보증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VC등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장기로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보증 도입을 통해 보증 효율화 추진
  - 재기지원자의 연대보증 채무(정책금융기관) 감면 범위를 50% → 75%로 확대하여 채무가 재기 의욕을 상쇄하는 것을 차단
  - 대위변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우수 기술기업이라면 보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신·기보법 개정)

③ (미래 新성장동력 육성)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확대 및 투자기능 강화

○ ICT, 바이오·헬스 등 창조경제, SW, 게임, 공연 등 문화융성 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 공급(대출 49조원, 투자 8조원, 보증 23조원)

○ 미래성장동력 기업간 M&A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콘텐츠 금융센터 설립\*\* 등 인프라 강화

\* [산업은행]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해외 기업인수 관련 M&A 주선 목표 ('13~'15년 평균 : 약 2억불/1.6건 ⇒ 목표 : 5억불, 최소 3건 이상)

\*\* 콘텐츠 발굴, 보증서 발급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파이낸스 존을 설치하고 정책금융지원, 크라우드펀딩 등 문화콘텐츠 분야 금융접근성 제고

\* 투자 수요가 있는 예비창업자 등은 혁신센터 방문만으로 '기업 투자정보 마당'에 기업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간소화

○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없이 원활히 지원

- 미래 新성장 분류기준이 제조업·서비스업을 모두 포괄하고 기술과 산업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있도록 개선 필요

- 심사평가 체계가 서비스업 등 非제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보완

- 적재적소에 자금지원이 되도록 사후검증 체계 마련 등

④ (투자금융 활성화) 성장사다리펀드의 핵심성장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 혁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혁신펀드(9개 센터 2,200억원 조성)의 조속한 투자 집행 추진('16년말까지 700억원 집행)

○ 문화콘텐츠, 통신·IT, 바이오·헬스분야에 대해 '16년 중 5천억원의 투자 집행 추진('16년 투자집행계획 1조원의 50% 수준)

## 추진일정 ① 실물지원기능 강화

	상반기	하반기	'17년	임기내
기술금융 투자 확대	투자형 기술신용평가 개시	기술금융 투자펀드 조성		
기술금융 대출 정착		은행 자체 기술평가 기반 대출 실시		연간 기술금융 대출 20조원 공급
비금융 경영지원 실시	우수 기술기업 컨설팅 지원	우수 기술기업 컨설팅 지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제도 시행 매칭펀드 조성 회수시장 마련	안내사이트 확대 개편	회수시장 활성화	제도 정착
기업 투자정보 마당 구축	영문판기업정보제공 해외VC 유치	글로벌 IR 지원		연내 3만개 이상 기업정보 등록
거래소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 후 거래소 상장 추진 로드맵 마련	공익기금 조성 등 IPO 전제조건 이행		전제조건 이행 완료 후 거래소 IPO 추진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코스닥·코넥스 관련 제도개선 M&A 중개망 구축			
기은·산은 역할 재편	창업기업 등 지원 ('16년 목표: 11조원) 중견기업 등 지원 ('16년 목표: 26조원)			창업기업 등 지원 ('18년 목표: 15조원) 중견기업 등 지원 ('18년 목표: 30조원)
보증체계 개편	창업기업 보증 공급 확대 창업기업 연대 보증 면제 재기지원 채무 감면범위 확대		新 보증*체계 시행 (창업·성장·위탁 안정)	창업기업 지원 ('16년 목표잔액: 신보 10.1조원 기보 5.3조원) ( '19년 목표잔액 신보 11.7조원 기보 5.9조원)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	'16년 목표 -산은: 19조원 공급 -기은: 31조원 공급 -기보: 5.4조원(보증잔액)			'18년까지 목표 -산은: 20조원 공급 -기은: 33조원 공급 '20년까지 목표 -기보: 6.5조원(보증잔액)
투자금융 활성화	M&A, PEF 기능 강화	M&A, PEF 기능 강화		

## 핵심과제 ②

## 금융회사 변화 촉진

## 가 금융감독·검사·규제 지속 개선으로 금융회사 자율 확대

◆ ‘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정착하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해소 노력도 지속

① (검사·제재개혁 착근) 금융당국의 행태 변화가 검사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검사·제재개혁 지속 추진

- 과징금·과태료 제도 개선, 제재시효제도 도입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이행
- 검사내용 중복 등 공동검사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공동검사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행과 제도를 단계별로 점검
- 외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행태변화를 실태 점검하고 인식·관행 변화를 위한 교육 강화

② (금융규제개혁) 업권간 업무영역 조정, ‘금융규제 프리존 (Regulatory Sandbox)’ 도입 검토 등 금융규제개혁 지속

- 업권 전반에 대해 업무영역 등 영업행위 규제 개선
  - 전업주의를 유지하면서 금융상품 판매·자문 업무의 겸영확대 등 업권간 업무영역 조정을 종합 검토
  - 실질적으로 인가제로 운영되어 온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를 원칙 폐지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중 최종 계약체결 등 핵심사항 외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업무위탁 규제 전반을 개선

○ '15년 금융규제개혁 과제 후속조치 점검 및 보완

- 금융규제개혁 과제 일괄 입법 추진을 통해 신속하게 제도 개선

\* 법률 개정사항 국회 제출('16.6) , 법률 하위 규정은 상반기 내 완료

- 불수용·추가검토 과제를 1분기 내 외부에 공개하여 개선 필요 여부에 대한 외부 의견 접수 및 재검토('패자부활전')

○ 시장참가자들이 혁신적인 금융상품, 비즈니스 모델 등을 규제부담 없이 테스트하는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 검토

\* 英 FCA는 잠재적 사업자에게 시장 테스트 계획에 대한 감독당국 승인을 전제로 시범 영업을 허용하는 Regulatory Sandbox 도입('16년부터 시행)

- 잠재적 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비즈니스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정책수요 발굴 및 타 부처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 등 종합 검토

③ (그림자규제 개선) 「금융규제 운영규정」('16.1.4) 이행 실태 점검 및 금융공공기관 등 금융유관기관의 규제개선 유도

○ 행정지도·감독행정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고충 해소를 위해 업권별 음부즈만 운영(내부규정 마련)

- 익명·비밀 보장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충 신고 지원

○ 국민, 금융회사에 사실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금융유관기관\*의 규칙, 지침 등의 투명성 제고 유도

\* 각 금융협회, 예금보험공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신·기보, 주금공, 산업은행 등

- 금융유관기관 규제목록 공개, 규제 제·개정 절차 규정화, 기관 내부에서 운영중인 규제심사위원회 논의결과 공개 등

- ④ (현장점검 강화) 금융소외계층 등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금융개혁과제에 대한 전파, 사후피드백 등 상시 개혁체계 구축
-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 소비자접점 실무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 대상 현장점검을 상시화
  - 현장점검반이 지역금융 실무자 면담을 통해 Bottom-Up 방식으로 지역밀착형 금융발전전략을 마련
    - 지역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지방 거주자, 주부, 대학생 등을 방문하여 ‘민원 일괄 해소의 날’ 추진
  - 금융회사들이 희망하고 그간 반복 제기된 핵심쟁점 위주로 금융회사에 대한 ‘테마 현장점검’ 실시
  - 개혁과제가 금융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전파를 강화하고 사후 피드백 실시
    - 개혁과제\*를 사업화, 상품개발로 연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금융협회, 전문가가 함께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정기개최
      - \* 현장점검 건의과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그림자 규제 등의 회신내용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업화 사례에 대해 ‘금융개혁상’ 수여
    - 개혁과제의 착근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여 추가 제도개선, 타부처 협업 등 정책A/S 실시
- 수 (소통강화) 금융정책 관련 포털 정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친화적인 소통채널 확보
- ‘기업금융나들목’, ‘서민금융1332’ 등 각종 포털을 개편하여 기업·서민들의 금융정책 접근성 제고
  - 정기적으로 금융정책 설명회, 언론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금융회사와 국민들이 금융정책 성과를 보다 쉽게 공유

**참고** **현장점검반을 통한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1. 금융소외계층 · 지역금융회사 대상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운영”**

- ① 지역금융소비자 · 소외계층 대상 “민원일괄해소의 날” 운영
  - 지역금융회사 · 지자체 · 금감원 지역사무소와 협조를 통해 지역 금융소외 계층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 사전에 법령해석 · 제재가능성 · 타 금융사 선례 등을 소관 부서와 협의 후 현장에서 즉각적 민원 해소가 가능토록 조치
  - \*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건의는 추가검토하여 수용여부 조속히 회신

② Bottom-Up 방식의 지역밀착형 금융발전전략 마련

[①단계: 지역금융 현장점검] 지역금융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금융산업 · 지역사회 특성이 담긴 고유 쟁점 발굴 ('16.1/4)

※ 민원일괄해소의 날을 병행 추진하여 지역금융 시장상황, 제도개선사항 발굴

[②단계: T/F 구성] 전문가 · 지역금융 실무자 T/F를 구성

< 주요 검토 과제 (예시) >

- (간접금융) 인터넷 전문은행, Fin Tech 진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특화 금융활성화
- (자본시장) 귀농 · 귀촌 프로젝트 금융지원 및 지역 주민 재테크 수단 다양화
- (정책금융) 신 · 기보를 통한 지역 창업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전략
- (소비자) 금감원 지원-지자체-지역금융사가 연계된 소비자 보호 네트워크 구축

**2. 금융개혁과제의 전파(사업화 · 상품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목적) ‘15년 ①현장건의과제 ②법령해석 ③비조치의견서 ④그림자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집대성하여 업계와 공유하고,
  - 이를 구체적 사업화 · 상품개발로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금융당국 · 협회 · 전문가가 함께 모여 고민하는 토론의 장을 개최
- (구성) ‘15년 현장점검 결과 및 사업화 사례 발표(금융당국) → 사업화 · 상품화 기획, 기대효과 발표(업권별 협회) → 전문가 토의

## 나 금융회사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확산 유도

◆ 금융권 스스로의 변화·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

① 금융개혁을 통해 규제·제도를 개선, 경쟁과 혁신여건 조성  
→ 금융회사가 전문성에 기초, 더 나은 상품·서비스 제공 필요

○ 그동안 검사·제재·규제 개혁 등 당국부터 변화하고 있고 개혁성과를 국민에 확산하도록 금융회사의 변화 중요

○ 당초 70개 개혁과제에 포함되었던 과제 → 15년 규제 개혁 등 제도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금융권 문화의 혁신 추진

\* 금융개혁방향(15.3.17) : 창의적·혁신적 임·직원이 대우받는 성과평가보상체계

② 3대원칙 : 『성과중심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공공부문 선도』

① (성과중심 차등화) 성과와 보상(승진·임금·평가 등)간 연계를 통해 잘하는 사람을 우대

→ 성과주의는 「인사·보수·교육·평가」 등 조직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며 임금에 한정된 이슈가 아님

② (금융업무 전문화) 금융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

→ 체계적 교육 등을 통해 전문적 금융업무에 걸맞은 개인과 조직의 역량 함양

③ (공공부문 선도)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기본모델 확립

→ 노사 합의를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사례를 도출하여 민간부문까지 성과중심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 마련

## 다 엄격한 직업윤리를 기반으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금융회사가 스스로 준법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

① (내부통제기구 역할 제고) 금융회사 감사, 준법감시인 등 내부 통제 조직의 권한, 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 및 개선

- 준법감시인을 지배구조법상 **최소 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하여 **지위를 제고**하고 자격요건 등을 명시화하여 **전문성 강화**

\*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소규모 금융회사 등은 직원으로 임명 가능

- 임기보장(2년 이상), 겸직제한으로 내부통제업무 충실성 제고,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완화** 등 직무상 독립성·권한도 강화

- 비카드 여전사 등으로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 적용 검토

\*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점검대상을 협의·선정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금감원은 사후적으로 이행결과 등을 점검·보완하는 제도('14년 도입)

\*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신용카드사 도입

② (윤리의식 및 교육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확산

- 금융회사 임직원의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고취

- 영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전문진제도 도입 및 내부통제 현장지도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 확대

- 금감원의 상시감시시스템 또는 타 금융회사의 우수시스템 사례를 확산하여 금융회사 자체 감시시스템 기능 강화 유도

③ (금융사고 보고·대응체제 정비) 금융사고 보고범위 개선, 일반 금융사고와 전자금융사고 구분 명확화 등

## 추진일정② 금융회사 변화 촉진

	상반기	하반기	'17년	임기내
검사·제재 개혁 착근	금전제재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공동검사 개선방안 마련	금전제재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금전제재 관련 법률 개정 완료	검사·제재 개혁 지속 추진
그림자규제 개선	옴부즈만 선정 및 운영규정 마련 금융유관기관 행정지도			
금융규제개혁	업권간 업무영역 조정방안 마련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방안 마련	관련 법령 개정		
현장점검강화	현장메신저 활동/ 지역현장점검 및 민원일괄해소의 날/ 정책시투 파백살시 사업화 토론회	지역현장점검 및 민원일괄해소의 날/ 지역밀착형 금융 발전전략 마련/ 불수용 과제 패자부활전	현장점검 상시 실시	현장점검 상설 조직화
소통강화	포털정비 정례 언론간담회	정례 언론간담회		
성과주의 문화확산	실태조사 및 방안마련	방안 점검 및 보완		
내부통제기구 역할 제고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	준법감시인 지위 제고		
교육강화	금감원 검사아카데미 개방	우수사례 확산		
금융사고 보고·대응체제 정비	보고대응체제 정비	보고대응체제 점검		

**핵심과제 ③**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가 핀테크 해외진출 등 글로벌 핀테크 강국으로의 도약**

◆ 세계 최고 수준의 핀테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적극 활용

①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인포 허브(Information Hub)를 구축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개편

○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활용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 구축

\* 핀테크 산업 현황 및 통계, 분야별 기업 안내, 자금지원 종류, 규제 개선 현황 등

○ 창업 상담 뿐만 아니라 상장, M&A 등 핀테크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체계 개편\*

\* 단계별(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 등 → 연구용역 발주('16.2)

○ 산은·기은 등 정책자금 지원 확대(('15)2천억원 → ('16)5천억원)

② (인프라 강화)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핀테크 관련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핀테크 선진화 TF」(가칭) 운영

※ '15.4월 구성된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확대 운영

- 핀테크 시대에 맞지 않는 금융권의 보수적 업무관행, 내규 등을 개선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을 고려한 선제적 규제 정비\*

\*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전자자금 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등

○ 혁신적 서비스의 쉽고 빠른 개발을 돕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구축

\* 송금·잔액조회 기능 등을 Open API 형태로 전환하여 핀테크 기업에 제공

③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 글로벌 핀테크 동향에 맞추어 국민 체감형 서비스의 지속적 출현을 유도

- 헬스케어 활동, 운전습관 등 맞춤형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보험상품 시범 출시(Telematics 보험)

\* TF를 구성(통신사,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법률 전문가 등)하여 상품구조 및 정보 활용·보호 방안 검토 →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시범상품 출시('16.하)

-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제 논의 동향에 적극 참여하고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

\* 금융거래시 각각의 거래내역을 암호화하여 모든 거래참여자의 장부에 기록하는 분산원장 시스템 → 거래비용이 낮고 해킹위험으로부터 안전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환송금 서비스** 및 **장외주식거래 플랫폼** 등

④ (해외진출 지원) 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KOTRA, 특허정보원, 민간 법무법인 등을 통해 해외 시장 분석, 특허 컨설팅·법률 자문 등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해외기관\*\*과의 MOU 체결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런던(4~5월), 동남아(6월), 실리콘밸리(10월), 상해(12월) 등

\*\* World Bank 산하 SME포럼, 싱가포르, 호주 등 각국 핀테크 육성기관

\*\*\* KOTRA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IR 참여비용 50% 지원** 등

- 진출 대상국의 금융·IT 인프라 수준 및 기존 국내기업 진출현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 지원\*\*

\* 예) 동남아 시장 공략시 현지 점유율이 높은 국내 N사의 SNS 서비스와 연계 진출 추진

\*\* 국내 핀테크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발주('16.2)

## 나 보험상품 · 가격 자율화 등 보험규제 전면 개편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19)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쟁과 혁신을 통한 세계 5대 보험강국으로의 도약기반 마련

① (보험상품 자율화) 시장수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정비, (가칭)상품심의위원회 설치 등 지속 추진

○ 연구용역을 거쳐\* 표준약관제도 전면 정비(’16.12)

\* 「표준약관 정비 TF」 운영('15.11 ~)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표준약관 정비 및 보완방안 등 세부적인 제도·법규 개선안 마련('16.9) 후 규정 개정 추진

○ (가칭)상품심의위원회(자동차·실손의료보험)를 설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하에 표준약관을 사전 심의(’16.4)

② (자산운용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칸막이식 자산운용을 탈피하여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지속 추진

○ 벤처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

\* 자회사 투자자금 부실화 가정시 RBC 150%↑, 유동성비율 100%↑ 충족

③ (보험판매채널 선진화) 보험모집과정에서 대리점·중개사 등의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여 불완전판매의 지속적 개선 도모

④ (소비자보호 강화) 사전 규제 완화가 소비자 보호 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 감독 체계를 강화

○ 現 표준약관 중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은 개별약관 반영사항으로 법규화하고 보험사의 상품공시에 대한 사후 감독 강화\*

\* 경영공시에 비해 취약한 상품공시에 대한 시정조치 등 사후 감독제도를 정비하여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보호 및 건전 영업질서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규모를 대폭 확대(보험업법 개정)

## 다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글로벌 IB 출현 지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대형 증권사들이 차별화된 기업금융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① (자금공급기능 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실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용공여 등 자금공급 관련 규제 개선

- 신용공여 한도를 완화(자기자본의 100%→200%)하고, 한도 산정시 예외범위 확대(지급보증, PF사업·사모증권 주선 관련 단기대출 등)
- 건전성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의 경우 NCR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

\* (예) NCR위험가중치 : AAA등급 기준 31.6% → 1.6% / A등급 기준 34.0% → 4.0%

② (신규업무 허용) 증권사가 천편일률적인 영업에서 벗어나 규모·자본력에 따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규업무 추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상장주식에 대량주문에 대한 장외 비경쟁매매 시장개설 허용
- 증권사에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업무를 허용하고, IB업무와 사모펀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재정비
-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IB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강한 중소형 증권사 육성

③ (시장여건 조성) 전문투자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

-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한 공모규제 완화
- 적격기관투자자(QIB) 전용 사모채권\*의 발행인 범위를 확대하고 건전성 규제부담을 경감하는 등 규제 완화 추진

\*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거래되는 채권으로 공시규제 등이 완화

## 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 AIIB 출범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해외사업을 활성화하고, 국내시장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

① (금융외교채널 확충) 주요국 금융당국과 정례회의 개최\*, 금융협력포럼, MOU체결 등 당국 간 공식협의채널 구축

- \* ① 한·중·일('06), 일본('12), 영국('14), 인나·베트남('15) : 정례회의 개최 중
- ② 미얀마·중국 등 주요 진출대상국과 회의정례화 조속추진

② (금융인프라 수출지원) EDCF(유상원조)·KSP·KOICA(무상원조) 사업 등 ODA자금을 활용하여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 실무급회의·초청연수·정책 자문관 등을 통해 사업발굴 및 수원국의 금융인프라 ODA 수요창출을 유도
- 주요 진출신흥국들과의 KSP사업 관련 MOU체결을 확대하여 향후 사업 추진력을 강화

③ (해외PF시장 진출 지원) AIIB출범을 계기로 해외PF 시장 진출 규제개선,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

- 보험사의 장기·중수익 해외SOC금융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 SOC금융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등 관련 규제 개선
- 해외PF 금융인력 양성 지원, 해외 금융 네트워크 강화 등

④ (해외기관과 협력강화) 해외 거래소, 파생시장, 예탁결제기관 등과의 연계\* 등을 통해 국제적 협력체계 확대

- \* 한-중간 예탁결제기관 연계 등을 통해 양국간 채권투자 활성화 추진 등

수 (대외홍보 강화) 해외 투자자, 금융기관 등에 금융개혁과 달라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금융환경을 적극 홍보

- \* 글로벌 금융중심지 런던에서 민관합동 제3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신흥국에서의 한국 금융중심지 IR 추진 등

## 추진일정 ③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상반기	하반기	'17년	임기내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 확대	핀테크 통합포털 구축	핀테크 통합포털 운영	핀테크 통합포털 운영
인프라 강화	Open API 구축 핀테크 TF 운영	Open API 및 테스트 베드 운영	Open API 및 테스트 베드 운영	Open API 및 테스트 베드 운영
다양한 서비스 출시	-	텔레메틱스 보험 시범 출시	신규 서비스 출시	신규 서비스 출시
해외진출 지원	해외 데모데이 개최	해외 데모데이 개최	해외 데모데이 개최	해외 데모데이 개최
보험상품 자율화	연구용역 및 상품심위위 운영	표준약관 관련 규정 개정	표준약관제도 전면 정비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투자형 자회사 요건 폐지			
보험판매채널 선진화	판매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	IFRS 관련 국제동향 점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준서 확정시 제도개선	IFRS 단계적 대응
자금공급기능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개정			
신규업무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개정 중기특허증권사 지정			
시장여건 조성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개정	QIB 인프라 정비 전문투자자 등록제도 정비		
금융외교 채널 확충	한영 금융협력 포럼 개최	중국 금융당국과 정례회의 도입 추진	금융세일즈 외교 지속 추진	금융세일즈 외교 지속 추진
금융인프라 수출지원	주요국 MOU체결 확대	한·주요국 국제금융 협력포럼 개최	수원국 금융인프라 수요 상시 발굴	수원국 금융인프라 수요 상시 발굴
해외PF시장 진출 지원	보험사 해외SOC투자 관련 규제개선	업권별 교육기관 해외전문가 과정 운영실태 점검·보완	정부-금융회사-인프라 기업간 협력플랫폼 구축	해외PF 성공모델 창출
해외기관과 협력 강화	거래안정화 장치 마련	진입·퇴출 요건의 국제정합성 제고		
대외홍보 강화	한영금융협력 포럼 개최	해외IR개최	해외IR개최	한영금융협력 포럼 개최

**핵심과제 ④**

**혁신적 금융상품 · 서비스 출시**

**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확대**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 온라인·모바일 등에 기반 둔 새로운 금융서비스 본격 출현 및 확대

① (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증권,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확대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실시) 계좌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편 잠자는 계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실시

○ 여러 건의 자동이체 내역을 온라인(Payinfo) 뿐 아니라 모바일(모바일뱅크), 은행창구에서도 간편하게 계좌간 변경 가능('16.2)

○ 본인의 은행 **쏠계좌\***를 한눈에 **‘조회’**하여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손쉽게 **‘해지’**, 주거래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16.4/4)

\* 1인당 계좌수(개, IMF): 일본 7.2, 한국 5.4, 스위스 3.2, 스페인 2.0, 네덜란드 1.5

\*\* 1년 이상 미사용계좌가 전체 수시입출금식 계좌의 49%(1억7백만개), 잔액 5.5조원

**Payinfo(자동이체 관리)**

국민 일상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 중

- 접속 82.5, **변경 31.9**, 해지 21.4 (만건)

영국('09년 도입) 이상의 높은 서비스 수준

-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통합전산시스템(Payinfo)** 접속만으로 이용 가능
- 처리기간 **단축**(영국 7일 → 한국 5일)
- 변경처리 **성공률 상회**(영국 75% → 한국 80%)

이용채널 및 서비스범위 확대

- ① **조회·해지 (Payinfo)** '15.7월
- ② **카드보통통신 계좌변경 (Payinfo)** '15.10월
- ③ **자동송금 (Payinfo+ 은행창구)** '16.2월
- ④ **모든 자동납부** '16.6월

**Account info(개인계좌 통합관리)**

현황

잠자는 계좌

- 1년 이상 입출금 없음 49%(1억7백만개)
- ✓ 국민입장에서 **경제적 손실**
- ✓ **금융사기·범죄** 악용 가능성

개선

현재	계좌관리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성 계좌</li> <li>자동이체 출금계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성 계좌 위주로 간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미사용계좌</li> <li>휴면계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면예금 관리재단</li> </ul>

Payinfo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

Account info (잔고이전 및 해지)

③ (보험다모아\* 개선) 실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험료 비교 기능을 정교화하는 한편, 모바일 채널·인터넷 포털 등에 확대

\* 보험다모아 출범(15.11.30.) 이후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로 가격 인하 (A사 16.2%↓, B사 17.6%↓, C사 15.4%↓, D사 17.3%↓)

○ 자동차보험은 차종, 운전자범위, 사고이력 등을 반영하여 실제 자동차 보험료가 산출·비교되도록 개선

○ 암·여행자보험 등은 온라인채널에 적합하도록 보다 간편하게 표준화\*하여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가입편의성도 제고

\* (현행) 보장내용이 다른데도 보험료를 비교하고 있어 소비자 오해 발생 가능  
 → (개선) 온라인 채널은 동일한 보장내용을 갖춘 상품간에만 비교·안내될 수 있도록 상품별 보장내용을 표준화 → 설계사 채널은 복잡하고 종합 컨설팅이 필요한 상품 취급

○ 핸드폰 등 모바일에서도 보험료 조회에 가능하도록 성능 개선

○ 인터넷 포털과도 연계하여 보험상품 비교 창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④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현행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

○ 환자유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추진

\*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이슈 등을 보완하여 보험회사, 의료기관, ICT업체간 시범운영 추진(필요시 보험업법령 개정 추진)

현행

- ▶ 보험사 직접접촉
- ▶ 복잡한 청구서류
- ▶ 소액건 누락




개선

- ▶ 병원에서 직접청구
- ▶ 실시간 간편 전송
- ▶ 낙전효과 최소화



**참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15년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계좌이동서비스(Payinfo)를 확대·개편하여 온라인상에서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시행('16下)

< Payinfo(자동이체 관리) >

< Account info(계좌관리) >



\* '자동이체 내역'을 계좌간에 자유롭게 이동      \* 본인의 '계좌'를 조회, 잔고이전, 해지 등 통합관리

**1. 계좌이동서비스(Payinfo) 전면시행('16년上)** ('15.10.29. 보도자료 참고)

- (채널) Payinfo 홈페이지 + '각 은행 창구 및 모바일뱅킹'(2월)
- (서비스) 자동납부 +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2월)

\* 자동이체 유형 : ①(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에 이용료 납부(예: 통신비)  
 ②(자동송금) 고객 스스로 금액·주기를 설정(예: 월세, 회비, 펀드납입금)

-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 카드·보험·통신 등 주요 업종 + 신문사·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종'(약 7만개)(6월)

**2.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시행('16년下)**

- (은행권 계좌조회)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 관련 은행명, 계좌번호, 이용상태(예: 활동성/장기미사용/휴면) 등을 일괄 조회
- (잔고이전 및 해지) 장기미사용 및 휴면계좌의 경우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잔고이전 가능(예외적으로 공익상 기부를 위한 타인명의 계좌(예: 휴면예금관리재단)로의 이체는 허용)
  - '잔고가 없는 계좌'(약 3천7백만개 추정, 장기 미사용 계좌 중 1/3 이상)에 대하여는 은행 방문없이 해지 처리

## 나 새로운 DNA를 지닌 플레이어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16년 출범시켜 금융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 1 (영업 개시) 점포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을 '16년(목표) 출범

\* 현행 은행법 체계 하에서 2개사 예비인가('15.11) → '16년중 본인가 예정

-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등으로 기존 금융권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중·저신용자·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

\* 향후 3년간 중금리 대출을 1.4조원 신규공급(양사 추정)

- 카드/VAN사/PG사간 연계를 최소화하고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한 **간편결제** 서비스로 수수료 절감

- Robo-advisor 기반의 **자동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계좌번호 없이 휴대폰번호·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이체 서비스**

\* 편의점·전화부스 ATM기에서 쉽게 금융 거래 이용 가능



### 2 (제도 정비) 혁신적인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 지속 추진

- 은행법 개정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2~3개(잠정)를 추가 인가**

-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에 맞는 **전산보안·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 다 비식별정보 활용 제약요인 해소를 통한 빅데이터 활성화

- ◆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사항들을 적극 발굴·해소
- ◆ 빅데이터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금융정보가 필요한 수요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 지원

### 1] (빅데이터 활용제약 해소)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의 제약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단계별 해소

- 외국 등과 같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신용정보법령 개정('16.8))
- 비식별정보가 재식별화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철저
  - (비식별정보 제공자) 비식별정보가 재식별 될 경우, 개인신용정보로 보아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제재 규정 적용
  - (비식별정보 이용자) 비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재식별할 경우, 동의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아 제재
- 금융회사들이 재식별 우려 등을 이유로 비식별정보의 활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 주관으로 비식별지침 마련(('16.6))

\* 정보처리 단계별(수집, 저장, 분석, 이용) 비식별화 조치 방식 등 마련

### 2] (빅데이터 지원 인프라 구축) 한국신용정보원\*(('16.1.1 출범)을 통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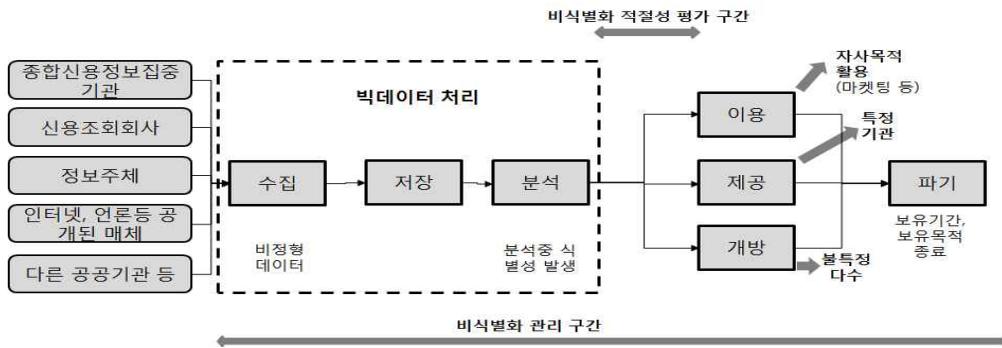
\* 은행연합회, 금투협, 생.손보험, 여전협, 보험개발원의 신용정보 통합

-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16.4)),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의 수요에 맞는 신용정보를 제공

**참고** 빅데이터 활용제약 해소

① 금융권 공동 비식별화 지침 마련

- (현행) 비식별화한 개인신용정보의 재식별화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신용정보법 적용·제재를 받게 되어 비식별화 방식 채택 부담
- (개선) 금융보안원, 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화 지침 마련·시행('16.6)
  - 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② 원활한 비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 (현행) 신용정보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신용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여부 불명확
  - \* 거래내용(대출, 보증 등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신용도(연체, 부도, 대위 변제 등), 신용거래능력(직업, 재산, 납세실적 등), 기타 정보(공공정보 등)
-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분석·활용에 제한
- (개선) 신용정보법령 개정('16.8)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여 비식별정보 활용에 대한 제약 완화

## 추진일정 ④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출시

	상반기	하반기	'17년	임기내
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적용	보안성·편의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실명거래 확산 유도		
계좌이동 서비스 실시	자동이체 범위 확대	은행 전계좌 조회·해지 등 기능 추가	서비스 고도화 추진	
보험다모아 개선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 비교기능 강화	소비자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추가 발굴	서비스 활성화 추진	보험상품 및 가격 경쟁촉진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시스템구축 등 실무협의 *보험사, 의료기관, ICT기업체	서비스 시범운용	서비스 활성화 지원	실손의료보험 청구편의성 증진
인터넷은행 영업개시	제도적 기반 구축 본인가 신청	본인가 영업 개시	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영업	은행법 개정 후 추가인가
인터넷은행 제도 정비	은행법 개정	은행법 개정		
빅데이터 지원 인프라 구축	한국신용정보원 출범(1.1) 빅데이터 지원방안 마련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제약 해소	비식별지침 마련	신용정보법 법령 개정		

**핵심과제 ⑤**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

**가 온라인 자문업 도입 등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품질 제고**

◆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등 소액투자자에 대한 자문서비스 확대를 통해 **對국민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품질 향상**

①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 전략 등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

- 금융상품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구성·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허용하되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충실의무를 부여**
-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 등의 **고객 설명을 의무화** 하고 자문에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불필요한 중복요소 제거**

② (독립투자자문업자 육성) 제조·판매업자와 절연되어 중립된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 자문업자(IFA) 도입

- 투자자문업 제도를 보완한 금융상품 자문업 제도 도입에 맞추어 **별도 등록단위로 도입**
- **온라인·개방형 판매채널**, 오프라인 판매채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자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③ (온라인 자문업자 도입) 대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현행 자문업 계약절차를 온라인으로도 허용하여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

④ (자산운용산업 신뢰도 제고) 운용사·매니저 관련 공시를 강화 하고 운용사·판매사에 대한 평가 내실화

\* 영업관행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에 대해 평가 후 공표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지표관리 추진

**참고**      **온라인 기반의 자문서비스 활성화**

**1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 도입·활성화**

- (현행) 자문업 계약의 대면 체결을 의무화하고, 자문인력이 아닌 자의 자문 제공을 금지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출현을 제한

\*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을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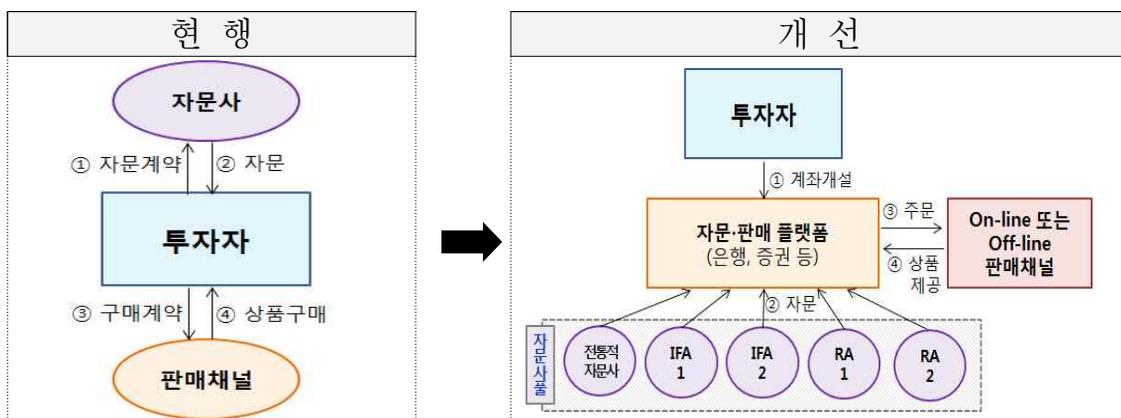
- (개선) 온라인을 통한 자문업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유효성·적합성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자문 제공 허용 추진

**2 자문·판매가 결합된 one-stop 자산관리서비스 도입**

- (현행) 자문과 판매가 별도 주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자문 결과를 반영한 금융상품 구매에 번거로움 초래

- (개선) 소비자가 전문 자문업자의 자문을 받아 손쉽게 금융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판매 결합 서비스 도입

- 1 은행·증권사 등 판매채널은 IFA(독립투자자자문업자), 로보 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자문사와 업무 제휴관계를 형성
- 2 판매채널은 이중 해당 소비자에게 적합한 자문사를 매칭
- 3 자문사는 연결된 소비자에게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추천해 주고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온라인 등) 제시



## 나 ISA 등 다양한 상품개발 및 판매채널 확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서민금융 기관, 온라인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시행 및 보완)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상품성 및 편의성을 제고 ('16.3)

- 신탁계좌에 한정된 ISA의 운용 Vehicle을 일임계좌까지 확대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
- 가입자의 1:1 운영지시를 기반으로 하는 IS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문 활성화
- 일시금 인출로 한정된 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을 다변화 검토  
\* 예) 최대 5년간 월지급 방식으로 인출 가능하도록 허용

② (중위험·중수익 상품 활성화) 정확한 위험평가와 이에 기반한 다양한 구조의 상품 출시 유도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최소가입금액, 충분한 분산요건 등을 전제로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 제도 도입을 재추진

③ (판매채널 확대) 서민금융, 온라인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 다양화

-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등 펀드 판매채널을 확대  
\* 재무상태, 안정적 영업기반을 갖춘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 허용
- Fin-tech를 활용한 온라인 전문 금융상품 판매채널 활성화  
\* 금융회사가 아닌 ICT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온라인 펀드판매사 대주주 진입을 허용하여 건전한 경쟁 촉진

## 다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 강화

◆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연금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준비 지원을 강화

- ① (연금자산의 운용 효율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식 도입 등 추진
  - 퇴직·개인연금계좌 간 계좌이동 허용('16.上), 대표상품제도 활성화 및 다양한 계약형태 등 도입
- ② (연금 접근성 제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연금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연금가입 확대 유도
  -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 \* 예) 만성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상품, 고연령 도달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등
  - 연금포털 연계대상을 확대\*하고, 노후행복설계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상담, 교육 등을 강화
    - \* 개인·퇴직연금과 직역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개인이 노후준비 현황 및 자가진단 등을 한 곳에서 확인 가능
- ③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가입·축적·운용·수령 전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
  -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
- ④ (연기금과 금융산업 동반성장) 국내 금융사에 대한 위탁운용 확대 등 주요 연기금과 금융산업의 동반성장 유도
  - 연기금의 투자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능력이 우수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참여기회\* 등 확대
    - \* 예) 해외투자 시 국내 위탁운용사 활용, 해외자산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정비 등

## 추진일정 ⑤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

	상반기	하반기	'17년	임기내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 및 제도 시행		
독립투자자문 업자 육성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 및 제도 시행		
온라인 자문업자 도입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 및 제도 시행		
자산운용산업 신뢰도 제고	자본시장법 법제처심사 및 국회제출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추진	펀드매너저 공시 등 자산운용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제도 시행 및 보완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제도 시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운용상황 점검		
중위험·중수익 상품 활성화	파생상품위험액 평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판매채널 확대	판매채널 확대 방안 발표·시행			
연금자산의 운용 효율화	개인·퇴직연금 계좌이동 허용	대표상품 도입방안 마련	개인연금 모범규준 마련·시행	대표상품 제도 활성화
연금 접근성 제고	연금포털 연계 확대	연금상품 개발	노후행복설계 센터 내실화	연금 가입 확대
개인연금 활성화법 제정		개인연금 활성화법 법률안 국회 제출		개인연금 활성화법 제정
연기금과 금융산업 동반성장	협의채널 구성	위탁운용 내실화	연기금 투자 다변화	국내 금융기관 참여기회 확대

## 2.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

### 〈 기본 방향 〉

- ◆ 금융개혁과 함께, 국내외 잠재위험을 선제적·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투자 기반 조성
- 여신심사 관행 개선 등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 최소화
- 업종별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 금융시장·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
-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틀 전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 [핵심과제⑥]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 나. 내집마련 및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 다.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등 주택연금 활성화
- 라. 가계부채 모니터링 및 주택금융 인프라 강화

#### ■ [핵심과제⑦] 한계기업·산업구조조정 추진

- 가.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유도
- 나. 조선, 해운 등 산업별 구조조정 지원
- 다. 기촉법 신속 제정 등 구조조정 제도적 기반 확립

#### ■ [핵심과제⑧] 금융시장 안정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

- 가. 금융시장 안정성·금융산업 건전성 제고
- 나. 기업공시제도 선진화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다.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

#### ■ [핵심과제⑨] 서민금융 지원 확대

- 가. 보증보험 연계 상품 확대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
- 나. 통합지원센터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
- 다.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 구축

#### ■ [핵심과제⑩]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가. 금융회사 책임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틀 전환
- 나. 금융사고방지 예방시스템 구축 및 테러자금 적극 차단
- 다. 금융교육 확대 등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핵심과제 ⑥**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실물경제 영향을 감안하여 연착륙 유도

① (은행 여신심사 선진화)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착근(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
- ② 주택구입자금 등 비교적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
- ③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 대출금액 산정
- ④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가이드라인 연착륙을 위해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의 다양한 예외를 인정

② (2금융권 관리 강화)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적극 대응

- ① (보험업권)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현재 보험업권 여신 선진화 T/F 운영중 → '16.하반기 시행예정)
- ②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토지, 상가 등)의 담보평가에 대한 관리 강화('15.11 행정지도 기 시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

③ (가계부채 구조개선) 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 등을 감안하여 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를 상향조정

구 분	'10년말	'15년말	연도별 목표치 및 조정		
			'15년말	'16년말	'17년말~
분할상환	6.4%	39.0%	35%	40% → 45%	45% → 50%
고정금리	0.5%	35.9%	35%	37.5%	40%

## 나 내집마련 및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주택금융은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① (주택구입 및 부채 구조개선) 정책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

- ① (보증자리론 공급) 보증자리론(10조원)을 통한 내집마련 지원
  - 주택구입시 소액보증금 공제로 인해 차감된 대출한도 보안을 위한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등 상품성을 개선하고, 상환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비소구 디딤돌대출 도입 검토
- ② (적격대출 공급) 적격대출(16조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② (임대주택 활성화) 임대주택을 통한 서민 주거부담 완화

- ① (임대사업자 보증지원) 주금공의 임대주택사업자 보증 확대
  - 건설/매입 임대사업보증 규모를 0.6조원('15년) → 1.0조원('16년)으로 확대하고 임대사업자 보증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 추진
    - \* 現 보증료율(%) : (건설임대) 0.3~0.9, (매입임대) 0.2~0.4
  - 소규모 일반 임대사업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광역시에 공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 전액보증 지원(90% → 100%)
- ② (임대사업자 투자확대) 보험사의 기업형임대주택 투자부담 완화
  - 보험사가 연기금과 공동으로 기업형임대주택 펀드(리츠) 투자시 투자위험 경감 등을 감안하여 신용리스크액 산출기준 완화
    - \* 현재는 지분투자액의 12%를 투자손실에 대비하여 자본으로 내부 유보
  - 보험사의 리츠 지분의 15% 이상 투자시 재무요건 의무\* 폐지
    - \* 자본금에서 투자액을 차감하여 RBC 150% 이상, 유동성 비율 100% 충족

## 다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등 주택연금 활성화

◆ 연령·소득 등을 감안한 맞춤형 주택연금을 개발·공급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도모

\* '15년 가계 평균 금융부채는 전년대비 약 4.9% 증가한 것에 비해, 60대 이상 고령층의 평균 금융부채는 약 12.8% 증가('15. 가계금융복지조사)

### 1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을 개발·공급('16.3)

- ① (60대 : 주담대 → 주택연금) 주담대 보유 국민이 주택연금 가입시 연금 일부를 일시인출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 매달 이자부담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

\* ① 주담대의 주택연금 전환시 일시인출 한도 확대(예: 50→70%)  
 ②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연 0.2%) 등 인센티브 제공  
 ③ 초기보증료율은 인하하되 연보증료는 일부만 조정하여 부담 경감

- ② (30~50대 :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의 금리우대(예: 0.05 ~ 0.1%↓) 및 주택연금 인출한도 확대

-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이용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전환 및 향후 주택연금으로 유도하는 '포괄적 연계'도 추진

- ③ (저소득층 : 우대형 주택연금)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 정부 출연 등을 통해 보다 낮은 연금산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더 많은 연금을 지급(예: 20% ↑)

### 2 (주택연금 제도 개선·홍보 강화)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를 지속 추진

- ①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고령층 가입을 적극 유도

\* ①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중 1인이 60세 이상으로 연령 적용대상 완화  
 ② 연금 가입대상 주택의 가격한도(9억원) 완화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②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상속대상 고정자산→활용가능 유동자산)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 위한 홍보 강화

**참 고**

**「내집연금」 3종세트 관련 사례**

① (주담대→주택연금) 주담대 1억원(금리 3%, 10년 일시상환, 4억 주택),  
매월 연금소득 99만원으로 이자 25만원을 갚고 있는 60세 A씨

○ 주택연금 가입시 월 가치분소득은 74 → 133만원\*으로 증가

\* 주택연금 34만원 + 국민연금 79만원(20년 불입 가정) + 개인연금 20만원

	주택연금 가입 X	⇒	주택연금 가입 O
주담대 부담	70세까지 매월 25만원		부채상환으로 이자부담 없음
주담대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70세에 1억원 상환		전환시 일시인출로 전액상환 (만기시 상환부담 없음)
연금 발생	X		60세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34만원 주택연금 추가수령
세제 혜택	X		재산세·소득세 매년 24만원 절감

② (보금자리론 연계) 보급자리론 0.8억원(금리 3.2%, 20년 분할상환,  
3억 주택)을 받은 50세 B씨가 주택연금 사전가입시,

○ 원리금 상환기간 중에는 연간 6만원(대출기간 10년간 60만원)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 주택연금 가입시 월 가치분소득은 165 → 222만원\*으로 증가

\* 주택연금 57만원 + 국민연금 95만원(30년 불입 가정) + 퇴직연금 70만원

\*\* 60세에 보급자리론 대출잔액 2,000만원을 주택연금 일시인출로 상환 가정

	보급자리론만 가입	⇒	보급자리론-주택연금 연계
이자 부담	60세까지 매월 63만원		(전환前) 매월 62.5만원(연간 6만원 이자절감) (전환後) 이자부담 없음(연금 전환)
원금 상환	원금 일시상환부담 없음 (원리금 분할상환)		전환시 일시인출로 전액 상환 (상환시까지 원리금 분할상환)
연금 발생	X		60세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57만원 주택연금 수령
세제 혜택	X		재산세·소득세 매년 20만원 절감

③ (우대형 주택연금) 1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매월 기초연금  
32만원을 받고 있는 75세 C씨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시, 월 가치분소득은 32 → 80만원\*으로 증가

\* 주택연금 48만원(일반형 40만원 대비 20%↑) + 기초연금 32만원

## 라 가계부채 모니터링 및 주택금융 인프라 강화

◆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금융공사가 가계부채 개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 기반을 견고히 구축

① (모니터링 강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동향 등 지속 점검

\*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한은, 금감원, 주금공, 금융研, 금융회사, 신용정보사 등

○ 집담대출에 대한 은행 자체 리스크관리 유도

② (주금공 기반 강화) 안정적인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지원 및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주금공의 재무적 기반 구축

○ 주금공 수권자본금 한도를 현행 2조원 → 5조원으로 상향\*하고, 재무건전성 확충 노력 지속

\* 주금공법 개정안('15.3.4, 이운룡 의원) 논의중

\*\* '15말 납입자본금: 1.83조원(정부 1.08조원, 주택도시기금 0.11조원, 한은 0.64조원)

- 주금공에 적합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각종 위기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단하여 대응

③ (MBS 발행·유통 활성화) MBS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품성 개선, 정보 공시 확대 등 투자자 친화적인 MBS 발행·유통시장 구축

○ (발행) 콜옵션 행사방식 변경 등 투자자 친화적 발행구조 도입 검토

○ (유통) 「MBS 통합 공시포털」을 운영하여 MBS 투자정보 적시 제공

○ (해외) 해외 커버드본드를 지속 발행하여 장기·고정금리 자금 조달

## 추진일정⑥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반기	하반기	'17년	임기내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안착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수도권 2.1일 / 비수도권 5.1일)	은행권 연착륙 지원 및 보험권 주담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가계부채 구조개선	분할상환 목표비중 상향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속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속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속
주택금융 지원	디딤돌대출 모기지 신용보증 및 비소구대출 검토	비소구대출 시범사업 검토	정책 주택금융 지원 지속	정책 주택금융 지원 지속
임대사업자 보증지원	임대사업자 보증료율 인하	일반 임대사업자 보증지원 강화	임대사업자 보증지원 지속	임대사업자 보증지원 지속
임대사업자 투자확대	보험사의 투자부담 완화	투자 촉진 지속	투자 촉진 지속	투자 촉진 지속
주담대 → 주택연금	상품 개발 및 출시(3월)	주택연금 공급 지속	주택연금 공급 지속	주택연금 공급 지속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상품 개발 및 출시(4월)	주택연금 공급 지속	주택연금 공급 지속	주택연금 공급 지속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 개발 및 출시(4월)	주택연금 공급 지속	주택연금 공급 지속	주택연금 공급 지속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및 홍보 강화	주금공법 개정 (이운룡 의원안)	주금공법 개정 및 홍보 강화	주택연금 공급 지속 및 홍보 강화	주택연금 공급 지속 및 홍보 강화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모니터링 지속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모니터링 지속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모니터링 지속
주택금융 인프라 강화	주금공법 개정 / 주금공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	주금공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및 MBS 활성화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건전성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건전성 강화
MBS 발행·유통 활성화	콜옵션 행사 방식 변경 검토	커버드본드 발행 및 MBS 통합 포털 운영	커버드본드 발행 및 MBS 통합 포털 운영	커버드본드 발행 및 MBS 통합 포털 운영

## 핵심과제 ⑦

##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추진

## 가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유도

- ◆ 기업 경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주요 업종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 증대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우리 경제내 잠재적 불안요인 조기 해소

①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 주채무계열은 재무구조평가(4월)를 통해 재무구조 취약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등 대기업그룹 부실위험 사전 대응
-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을 선정하고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추진

\*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정기 신용위험평가 : '15.4~6  
 중소기업(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정기 신용위험평가 : '15.7~10

- 희생가능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금융지원으로 정상화 지원
- 지속불가능한 기업은 신속 정리하여 시장불안 해소 및 자원 배분 효율화
- 평가 전후에도, 기업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수시 신용 위험평가 등을 통해 적극 대응

② (구조조정 현장 점검) 금감원 및 외부전문기관 공동으로 채권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16.1)

## 나 조선, 해운 등 산업별 구조조정 지원

◆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방향 제시를 통해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실행\*\*

\* 기재부, 산업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감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 참석  
 \*\* 채권단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

- ① (조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다운사이징 및 선종 특화, 과당 경쟁 방지장치 마련
- ② (해운)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초대형 선박 신조 및 중고 선박 매입을 지원하는 선박펀드 활성화

◆ (초대형·에코쉽 신조 지원) 국적 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선박펀드를 조성(12억불 규모)하여 BBC 방식 (Bare Boat Charter)\*으로 초대형 선박 신조를 지원

\* 용선기간 종료시 소유권이 선박펀드에 있어 해운사(용선사)가 매각 및 선가하락 Risk를 지지 않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부채비율 영향無)하므로 해운사가 선호

◆ (선박은행) 자산관리공사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는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5년간 1조원 규모로 중고선박 매입후 재임대(S&LB) 지원\*

\* '15년 5개 선사(7척 인수)에 1,109억원 지원, '16년 1,000억원 내외 지원 추진  
 ※ 해운보증기구는 선박펀드의 원활한 지원 유인을 위해 후순위 보증지원

- ③ (석유화학) TPA업계는 수익성 회복을 위해 생산설비 약 30% 감축 필요 → 업계 자율로 조정
- ④ (철강) 망간합금철업계 생산능력 약 40% 감축 필요
- 수 (건설) 상시 구조조정 및 정상기업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지원 시행
- ⑥ (기타업종) 사안 발생시, 「정부내 협의체」에서 논의 예정

## 다 기촉법 신속 제정 등 구조조정 제도적 기반 확립

◆ 기촉법 만료('15.12말) 등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 보완 필요 ⇒ 기촉법 신속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 강화

① (기촉법 제정) 기촉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제정하여,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발생하는 부실기업은 '자율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구조조정 추진

\*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부실기업 워크아웃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입법 추진('16.上) → **입법공백 해소**

○ 워크아웃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소액채권자 배제 등)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보완하고, 업권 및 기업 대상 적극 홍보

② (중소기업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후 재임대(Sales&Lease Back)\* 지원 확대('15년 541억원 → '16년 1,500억원)

\* 공장·설비 등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여 일시적 유동성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이를 재임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영업활동도 가능

③ (유암코 활용) 유암코 기업구조조정 기능의 확대·본격화를 통해 채권은행이 아닌 시장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으로 큰 틀 전환 유도

○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채권은행별로 분산된 부실채권·주식 등을 매입하고 재무구조개선 등 기업정상화 추진

\* '16.1/4 중 투자대상기업을 확정하여 기업구조조정 본격추진

④ (인센티브 체계 개편) 은행 영업점이 거래기업 구조조정을 기피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체계(KPI)를 개편

○ 선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에 따른 영업점 손실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 보완

## 추진일정⑦ 한계기업 · 산업 구조조정 추진

	상반기	하반기	'17년	임기내
상시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4~5월)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4~6월)	중소기업 정기신용위험평가 (7~10월)  대기업 수시신용위험평가 (11~12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및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계속)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및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계속)
구조조정 현장점검	금감원 · 외부전문 기관 공동 현장점검(1월)			
해운 등 구조조정 지원	선박 신조 프로그램 세부방안 마련  중고선박 매입 및 용선 지원	조건충족 해운사 신조 지원  중고선박 매입 및 용선 지원	조건충족 해운사 신조 지원  중고선박 매입 및 용선 지원	조건충족 해운사 신조 지원  중고선박 매입 및 용선 지원
기촉법 제정	기촉법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중소기업 지원	대상기업 선정·지원(수시)	대상기업 선정·지원(수시)	대상기업 선정·지원(수시)	대상기업 선정·지원(수시)
유암코 활용	1호 투자 실행 및 관련 프로세스 진행	인수 기업 선정 및 투자 실행	인수 기업 선정 및 투자 실행	인수 기업 선정 및 투자 실행
인센티브 체계 개편	인센티브 체계 개편 관련 업권 의견수렴	인센티브 체계 개편 완료		

## 핵심과제 ⑧

## 금융시장 안정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

## 가 금융시장 안정성·금융산업 건전성 제고

◆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제고

① (위험점검체계 강화) 대외 불안요인 및 대내 과급영향에 대한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력·대응체계를 한층 강화

- 현재 既마련된 관계기관간 ‘거시경제금융회의’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
- 금융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건전성 및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여력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대응

② (대외부문 대응여력 제고)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 규제 체계 전면 재정비

- 시스템적 위협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도입(現 모니터링) 추진
- 매일 실시하고 있는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하여 충분한 외화자금 확보 유도

\* 과거 위기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불안 양상을 반영한 다양한 충격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외화 유동성 확보 수준의 적정성 점검

③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바젤Ⅲ(은행)는 단계적 정착시켜 나가고, IFRS4 2단계(보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정비 검토

- '16년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등을 본격 적용하여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 보험 IFRS4 2단계 대응을 위해 국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존계약-신규계약 구분 도입 등 연착륙 도입방안을 검토

④ (금융그룹 감독 강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체계 구축

\* 母子회사형 금융전업그룹,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금융그룹 등

- 금융그룹이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는 통합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위험전이 및 위험집중을 차단

수 (제2 금융권 건전성규제 강화)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대형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하고 리스크 지속 점검

- 저축은행 대형사(자산1조원↑) BIS비율 기준을 상향(7→8%)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한 업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강화
- 대형조합(총자산 5천억원↑) 등 상호금융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등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⑥ (상시감시시스템 선진화) 리스크요인 조기 포착을 위해 비계량 정보 확충 등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 불완전판매 등 신규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계량 정보뿐만 아니라 비계량 정보를 확충하고 집중관리
- VAN사, 대부업,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클라우드펀딩 등 신규감독 대상 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방안 마련

⑦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및 회사채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는 등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
- 기관투자자 등 수요기반 확충,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 등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추진

## 나 기업공시제도 선진화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기업공시제도 선진화, 불공정조사 강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 ① (기업공시제도 선진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 기업 특성·상황에 맞는 투자정보의 충분한 제공을 위해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공시체계로 전환
  - 공시자료 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구축
  - 기업신용평가의 품질제고 및 평가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신용평가시장 개선방안 마련
- ② (회계투명성 강화) 잘못된 정보생산 방지를 위해 회계부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회계감독제도를 선진화
  - 감사인 선임권한을 내부감사 기구(종래 경영진)로 이전하고, 회계품질관리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
  - 일정규모 이상 유한회사에 대해 주식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 (회계처리 기준, 외부감사 의무 등) 적용
- ③ (불공정거래 조사 투명성 확보) 국내외 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조사협력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조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불공정거래 조사시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규제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 제고
  - 변호인 참여권보장, 심의전 사전통지 및 안전열람 등 추진

④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내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보호 노력 확대를 위한 ‘(가칭) 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준칙(스튜어드쉽코드)’ 본격 시행

\*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감시,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등

-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기업들이 준수여부를 자율공시하는 ‘Comply or Explain’ 원칙 검토

- 기업들의 사회책임 투자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강화를 위한 ‘新 SRI지수’ 시행

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시행('16.8.1)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금융회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이 강화

-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에도 최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여 부적격 대주주의 운영 리스크를 사전 차단

- 이사회 구성·운영, 임원 성과평가, 최고경영자 승계 등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하고, 이를 공시하여 경영 투명성·책임성 강화

- 금융회사와 그 소속 임직원의 변화·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 체계를 도입하여 성과주의 확산

- 현행 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정 추진

## 다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

◇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회생·정리제도를 국내 도입

①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효율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도록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 부실보험사를 청·파산, 일부계약이전 방식 등으로 정리시 보험 계약 특성상 발생가능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

\* (과거)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국민경제적 손실을 감안, '전부계약이전'으로 처리 (현재) 예보기금 투입에 따라 '최소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방식 선택

- 부실보험사 정리시 보험계약의 재가입 위험 등 특성을 감안하여 처리방식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정리 효율성 제고

○ 자회사 부실에 따른 금융지주사 부실화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정리방식을 금융지주회사에 도입 검토

\* 부실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산법 §12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예보의 자금지원이 가능(예보법 §38①)

② (회생·정리제도\* 도입)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의 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 혼란을 방지하면서 납세자 부담이 없는 정리방식 도입

\*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조기종결일시정지 제도 등

○ G20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방향('15.10)」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제도 마련

\* 관계기관 합동TF 구성(안) :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예보, 한은 등

○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6년 하반기 금산법 개정 추진

## 추진일정<sup>⑧</sup> 금융시장 안정 강화 및 질서 확립

	상반기	하반기	'17년	임기내
위험점검체계 강화	정기·수시 점검회의 개최	정기·수시 점검회의 개최	정기·수시 점검회의 개최	정기·수시 점검회의 개최
대외부문 대응여력 제고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방안 마련	관련 법규 개정	외환건전성 모니터링 지속	외환건전성 모니터링 지속
글로벌 정합성 제고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운영방안 마련 IFRS 및 재무건전성 효과분석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IFRS 관련 국제동향 모니터링	기준서 확정시 신속한 제도개선	보험산업 재무건전성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강화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	금융그룹 감독 모범기준 마련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금융그룹 감독체계 안착
제2 금융권 건전성규제 강화	리스크 관리 지속, 대형 저축은행 BIS 비율 상향	리스크 관리 지속, 대형조합 건전성 규제 강화	리스크 관리 지속	리스크 관리 지속
상시감시 시스템 선진화	상시감시 방안 마련			
안정적 수요기반 마련	워킹 그룹 지속 협의	관찰대상국 (review list) 편입	MSCI 선진지수 편입	
기업공시제도 선진화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포괄주의 공시 체계 조성	-	-
회계투명성 강화	관련 법 개정 추진	관련 제도 개선 지속 추진	관련 제도 개선 지속 추진	관련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불공정거래 조사 투명성 확보	- 외국기관과 업무 공조 방안 마련 - 사전통지 및 인건 열람 규정 검토	- 외국기관과 불공정 조사 협력 확대 - 사전통지 및 인건 열람 개정 추진	- 외국기관과 불공정 조사 협력 확대	- 외국기관과 불공정 조사 협력 확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Comply or Explain 공시 도입 검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	지배구조법 시행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효율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관련 법 개정안 국회제출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계기관 합동 TF 운영	입법예고	시범실시	FSB 권고안 준수

**핵심과제 ⑨**

**서민금융 지원 확대**

**가 보증보험 연계 상품 확대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

◆ 금리단층\* 해소를 위해 보증보험 연계상품 출시확대 등 중금리대출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 금융회사별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차이(금리단층) → 제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면, 20%대 금리 대출을 받게 되어 금리부담이 과다

1] (공급경로의 다양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연계영업 활성화 등 다양한 상품의 출현 유도

- 인터넷전문은행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 중금리 대출 확대
- 은행·저축은행권 중심으로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 상품을 최대 1조원 수준 공급  
 \* 주고객층, 영업망 등이 업권 간 상이한 특성을 감안, 상품구조를 차등화하여 제공
- 연계영업 실적 서민금융평가 반영 등 업권간 자발적인 연계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도적인 지원\*도 강화  
 \* 저축은행 이용시 과도한 신용등급 하락 완화, 불필요한 서류 부담 완화 등

2]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신용정보의 집중·공유 범위를 확대 하고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

-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 비금융거래 정보 수집체계 구축 등 신용정보 제공을 강화
-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통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정교화 지원\* 및 저축은행권 CSS개선 유도 등 여신심사 역량 강화  
 \* 한국신용정보원 출범('16.1.1), 개인신용정보 비식별화 지침 마련

3] (제도적 지원) 중금리 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 여부 지속 점검·지도

- \* 저축은행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중금리 대출 실적 우대, 비교공시 강화 등

## 나 현장 지원 전국망 구축 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 ◆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① (서민금융 지원 확대) 햇살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개별 정책 서민금융상품 운용 개선방안 마련

-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7조원(47만명) → 연 5.7조원(약 60만명 수준)으로 확대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 → 연 27.9%'로 인하(「대부업법」 개정 필요)

\* 서민층의 이자부담(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수준 추정) 경감 도모

- 그간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자금 지원 실적 등을 분석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별 맞춤형 운용 개선방안 검토\*

\* 예)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대상·기준 등 상품구조 개선 등

② (현장 지원 전국망 구축)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 접점을 전국 범위로 대폭 확대

- '16년 중 취약계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총 32개소 '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구축

\* 고용·복지+센터, 지자체 청사 등에 종합상담 및 일부 지원이 가능한 '상담·지원센터'도 현재 54개에서 약 100개소까지 확대 설치

- 국민행복기금의 '다모아 콜센터(1397)'를 확대·개편하여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를 설립(상담번호를 1397'로 단일화)

③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Delta 0.7\%p$ )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수수료 인하 추진

\* (연매출 2억원 이하) 1.5% → 0.8%, (연매출 2~3억원 이하) 2.0% → 1.3%

-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대형 일반가맹점은 평균 2.2%에서 1.9%로 약 0.3%p 인하(추정치)

## 다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 구축

◆ 채무자의 자활·재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 구축

①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연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대출 만기 도래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 도입

○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 우려 고객을 찾아 만기 2개월 전에 분할상환, 만기연장, 대환대출 등을 안내·지원

② (맞춤형 채무조정) 소득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탄력적인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를 전면 개편

○ 상각채권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 → 60%로 확대

- 특히,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면율을 확대(최대 70%→90%)

○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 등 상환능력에 맞추어 구체적인 지원폭(원금 감면율)이 결정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시스템 구축

\* 가용소득(월소득 - 생계비)에 따라 감면율 및 상환기간 등을 차등화

③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채무자가 적합한 지원 제도를 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관련 안내·상담 등을 활성화

○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3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신복위 지원 정보(종합신용상담, 연락처 등)를 통보토록 의무화

○ 신복위가 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보수 등 소요비용 전액 지원

## 추진일정<sup>⑨</sup> 서민금융 지원 확대

	상반기	하반기	'17년	임기내
공급확대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상품 출시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상품 지속 공급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상품 지속 공급
‘은행-제2금융권’ 연계대출 활성화	서류작성 부담 간소화	서민금융평가에 반영	서민금융평가에 반영	서민금융평가에 반영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제2금융권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속도 조정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	
서민금융 지원 확대	4대 정책상품 지속 공급	4대 정책상품 지속 공급	4대 정책상품 지속 공급	4대 정책상품 지속 공급
현장 지원 전국망 구축	통합지원센터 등 추가 개소	통합지원센터 등 추가 개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감독규정 개정 및 적용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 실시	지원 지속	지원 지속
맞춤형 채무조정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 개편	맞춤형 채무조정 적용	맞춤형 채무조정 적용	맞춤형 채무조정 적용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 파산관련 실비 지원	취약계층 파산관련 실비 지원	취약계층 파산관련 실비 지원	취약계층 파산관련 실비 지원

## 핵심과제 ⑩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가 금융회사 책임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틀 전환

◆ 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예금자보호 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신뢰금융 구현

1] (금융회사 책임성 제고) 금융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당국의 사후 감독 강화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

○ (약관·광고) 개별약관 제·개정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과징금 등 사후제재 강화

- 금융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기능을 신설·확대\*하고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협회 광고 제재기준을 정비

\* (은행연합회·여신협회) 자율규제기능 신설, (여타협회) 심사대상 확대 등

○ (상시모니터링) 판매과정에서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우려시 금융당국이 시정조치하는 시스템 구축

\* 상품내용·판매방식 등의 상시모니터링(금감원) → 문제 있을시 판매제한 등 조치

○ (인센티브 개선) 지나친 판매중심 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2]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과 기구 등을 전면 재정비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안착

○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조직·기능을 정비하고 금융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간 연계\*를 강화

\* 예) 민원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 → 감독·검사파트 공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 감독·검사업무에 활용

③ (불완전판매 예방)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금융상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한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 구축

- 투자권유판단에 대한 금융회사 기록의무 부여(‘적합성 보고서’), 부가상품 설명의무 등 강화 및 취약계층(고령층 등) 보호

\* 부가상품 내용·유지기간 등 설명의무 강화, 유료 전환시 소비자 의사 확인 등

④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하는 등 대부업 등록체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 대형 대부업체 등은 기존 시도에서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검사·제재 등을 금융당국에서 수행

\* 대부업자별 최소 자기자본 요건(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3억원 등) 등도 신설

- 감독권 이관에 따른 신규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효율적 검사방안을 수립·추진하고 테마검사 실시

수 (예금자보호 강화)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자 불편 최소화 등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예보제도 선진화를 통해 예보기금 운영을 효율화

- 예금보험사고 발생시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예금자 불편 최소화

- 예금보험금 지급시 보호한도 내에서 예금이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뱅크런(Bank-run)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차등보험제를 개선하는 등 예금자보호 제도를 선진화

- 차등보험료율제도 운영 관련 등급 편중현상 완화, 평가지표의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 제고

\* 경기업황 등에 따라 특정 업권의 등급이 결정되지 않도록 평가지표 및 기준 조정

## 나 금융사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강화 및 테러자금 차단

◆ 금융사고 및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지속 개선 및 테러자금 차단 등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강화

① (금융 전산보안 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강화

○ 금융보안원 중심의 FDS 정보공유 시스템\* 및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금융사고 및 전자금융사기 방지 강화

\* 전자금융거래.접속정보 등을 분석하여 사고거래 정보를 탐지.공유하는 시스템

② (전자금융사기 대응) 금융사기 확산을 억제하고 진화하는 금융사기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 대포통장 매매 광고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제도 시행

○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개선

※ 정상 영업계좌를 보이스피싱 사용 계좌로 허위신고하여 지급정지 시킨 후 계좌주에게 지급정지 해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현행) 유선으로 지급정지 신청한 후 신청서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정지 유지  
→ (개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정지 해제

③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강화) 신용정보원의 보험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

\* IFPS: Insurance Fraud Prevention System 「(가칭)보험사기 다잡아」

○ 보험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기·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유인 차단('16.8)

○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기반의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 도입방안 마련

\* 보험금 청구기관별 보험금 청구액·청구기간 등의 평균·분포·상대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허위·과잉 청구 등 보험사기를 사전 인지하는 시스템

④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수사기관, 금감원 등 유관기관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

-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에 따라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예방 및 제도개선 노력

수 (자금세탁방지) 핀테크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거래 환경에 대응하여 심사분석 역량 강화 및 품질 제고

- 비대면거래를 악용한 외국의 자금세탁사례를 분석하고 심사분석기법을 개발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
-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보고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보고의 질을 높이고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로 심사분석품질 제고
  - \* 금융회사와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법집행기관협의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의견을 심사과정에 반영

⑥ (테러자금 차단)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국제규범의 정립 및 이행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

- FATF 의장국 활동('15.7~'16.6)을 통해 글로벌 핵심 이슈를 주도하고 FATF 부산 총회('16.6)를 성공적으로 개최
- FATF 교육연구기구\*를 설립·운영하여 테러자금차단 노하우 습득 및 전파
  - \*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예정

○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등 국내외 공조 강화

- \* 정보교환협정(MOU)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59개 국가 ⇒ 64개 국가

## 다 금융교육 확대 등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 금융교육 활성화, 적극적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비대칭 해소 등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지원

① (금융교육 확대) 금융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금융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생활중심' 교육 강화

- 생애주기, 취약계층 別 맞춤형 교육 강화, 체험관·캠프 등 체험형 교육 확대
- 공동 공모전·캠페인·컨텐츠 개발 실시 등 금융협회·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 금융교육기회 대폭 확대 : ('14) 160만명 → ('16) 200만명

② (정보제공 확대 등) 민원 정보공개 확대, 자료접근권 보장, 분쟁 처리의 신속성 제고 등 소비자의 사전·사후적 권익을 강화

- 민원 DB 등을 통해 금감원의 민원내용·해결과정·결과 등 공개를 추진 →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열람
- 금융회사 보관자료를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다만, 영업비밀 침해 등의 경우 제한 가능)
- 금감원의 유형별 분쟁 분류·처리, 신속처리반 및 전담인력 보장 등을 통해 분쟁처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③ (판매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판매수수료 수준 공시 및 설명을 의무화(대상·시기 등은 차별화)

- 특히, 복수상품 비교·권유시 각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 판매시에는 별도 안내

## 추진일정<sup>⑩</sup>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상반기	하반기	'17년	임기내
금융회사 책임성 제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관련 모범규준 개정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금감원 조직·기능 재배치	금소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국회 통과 노력 지속		
불완전판매 예방	취약계층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적합성 보고서 도입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대부업법 하위법령 정비	대부업법 하위법령 정비	대부업 관리감독 지속	대부업 관리감독 지속
예금자보호 강화	제도개선방안 마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		
금융 전산보안 강화	FDS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전자금융사기 대응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	지속적 규제개선	지속적 규제개선	지속적 규제개선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강화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보험사기방지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통계기반의 보험사기방지 시스템 구축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불법사금융 단속 지속	불법사금융 단속 지속	불법사금융 단속 지속	불법사금융 단속 지속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적극 차단	FATF의장직 수행 의심거래보고 피드백 강화 FATF총회 개최	FATF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집행기관과의 공조 확대 심사분석 기법 개발 교육연구기구 설립	FATF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금융교육 확대	금융협회 공동캠페인 개최	금융캠프 및 공모전 실시	지속적 교육 확대	지속적 교육 확대
정보제공 확대	민원분쟁 신속처리반 신설 및 유형별 분류·처리	금감원 민원 DB 공개		
판매수수료공시·설명 의무 강화		판매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개정		

## IV. 금융위원회 일반 현황

1. 기구 및 조직
2. 부서별 주요기능
3. 정원 및 현원
4. 2016년 예산 및 기금 현황
5. 소관 법률 현황
6. 산하 공공기관 현황



# 1 기구 및 조직

##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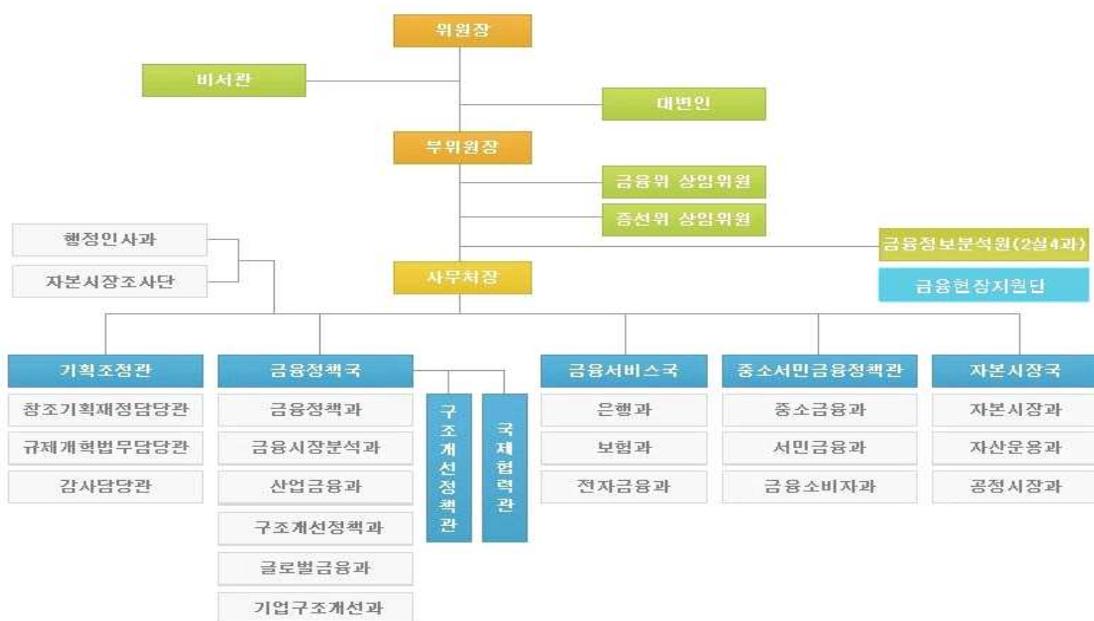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3정책관 19과로 사무처를 구성

## □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설치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 2 부서별 주요기능

구분	주요 기능
기획조정관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국회 관계 업무 총괄 및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내·외부 감사 및 비상계획업무 총괄
행정인사과	·내·외부 인사 및 조직 관리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금융정책국	·금융정책의 수립 및 감독업무 총괄 ·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외국환건전성 감독 ·중소기업금융정책 및 예금보호정책 수립 ·창조금융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창조금융 지원
국제협력관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및 시행
금융서비스국	·은행업 및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은행업 및 보험업 감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책 수립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중소금융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 관련 정책 ·서민금융정책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정책 ·금융소비자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총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정책 수립 및 총괄 ·자산운용 관련 정책 총괄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및 공인회계사 정책 총괄
자본시장조사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총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분류 ·국내외 불공정거래 조사기관간 협력
대변인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정리
금융현장지원단	·금융현장의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접수 ·금융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사후관리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정책 총괄 및 검사·감독 제도 운영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및 제공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력

## 3 정원 및 현원

□ 정원 : 257명, 현원 : 266명 ( ' 15.12.29. 현재)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계
정원 합계	2	244	3	8	257
(현원 합계)	(2)	(253)	(3)	(8)	(266)
본부	2	193	3	-	198
금융정보분석원	-	51	-	8	59

## 4 2016년 예산 및 기금 현황

□ '16년 소관 예산 : 2조 142억원 ( '15년 대비 65.1%)

○ '16년 금융위원회 운영예산은 2,142억원 ( '15년 대비 △2.8%)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예산(A)	2016예산(B)	증감액 (B-A)	증감율 (%)
일반 회계(I+II)	1,220,317	2,014,174	793,857	65.1
I. 금융위원회 운영	220,317	214,174	△6,143	△2.8
○ 인 건 비	20,631	22,556	1,925	9.3
○ 기 본 경 비	7,067	7,372	305	4.3
○ 사 업 비	192,619	184,246	△8,373	△4.3
II. 내부 거래	1,000,000	1,800,000	800,000	80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1,000,000	1,800,000	800,000	80

\* 주요 사업 :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출자(설비투자펀드, 안전투자펀드)(800억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출자(해운보증기구설립)(400억원) 등

□ 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11조 1,635억원 등 금융위 소관 7개 기금 운용계획은 총 29조 9,855억원( '15년 대비 25.3%)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5년(수정) (A)	2016년 (B)	증감	
			B-A	%
공적자금상환기금	3,260,040	11,163,473	7,903,433	242.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01,443	100,431	△1,012	△1.0
신용보증기금	5,654,188	4,872,189	△701,999	△12.6
기술신용보증기금	2,539,767	2,468,867	△30,900	△1.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513,370	1,015,978	△497,392	△32.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033,870	3,883,456	△150,414	△3.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6,835,427	6,481,124	△354,303	△5.2
합 계	23,938,105	29,985,518	6,047,413	25.3

## 5 소관 법률 현황

□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은 총 40개

구 분	법 률 명
금융정책 관련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업금융 관련 (5)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구조개선 관련 (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글로벌금융 관련 (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 관련 (5)	·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보험 관련 (2)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 관련 (2)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중소서민금융 관련 (6)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 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관련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사채 등록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회계 관련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금융정보분석원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6 산하 공공기관 현황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 8개 기관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담보력 부족기업·기술기업 등의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지원
  -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제도 운용, 금융회사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전세자금 및 주택건설자금 대출보증, 주택연금보증 등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촉진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및 유통의 원활화를 달성
  - (한국산업은행) 성장동력산업 확충, 시장안전판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공급 전문역할 수행
- ② 기타 산하공공기관 : 1개 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감독업무 수행

### [참고] 공공기관 지정요건

분류		지정요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수입 50% 이상 직원 50인 이상	0
	준정부기관	자체수입 50% 미만 직원 50인 이상	5
	기 타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3
기타 산하공공기관		-	1

## [참고]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주요현황

기관명		기관장 (임기)	설립근거	조직 및 인원	총자산* (억원)	'15예산 (억원)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13.10.1~ '16.9.30)	신용보증기금법	13부 4실 (2,201명)	81,294	56,542
	기술신용보증기금	김한철 ('14.1.14~ '17.1.13)	기술보증기금법	10부 2실 (1,128명)	33,397	25,398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15.5.27~ '18.5.26)	예금자보호법	14부 5실 2국 (675명)	227,942	1,070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재천 ('14.10.29~ '17.10.28)	주택금융공사법	4본부, 3실 14부 1연구소 (527명)	953,601	1,499
	한국자산관리공사	홍영만 ('13.11.18~ '16.11.17)	자산관리공사법	5본부 27부 (1,202명)	24,323	2,856
	한국예탁결제원	유재훈 ('13.11.28~ '16.11.27)	자본시장법	6본부 23부 2지원 (480명)	27,611	1,643
	한국산업은행	홍기택 ('13.4.15~ '16.4.8)	한국산업은행법	11부문 7본부 55부·실 (3,176명)	2,282,432	8,772
	중소기업은행	권선주 ('13.12.28~ '16.12.27)	중소기업은행법	15그룹 1연구소 53부서 (8,430명)	2,454,277	28,157
기타 산하공공 기관	금융감독원	진웅섭 ('14.11.19~ '17.11.1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처 43국 14실 1센터 (1,900명)	- (무자본 특수법인)	3,069

\* 고유계정 + 특별계정

[첨부] 금융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추진현황 점검



# 1. 국정과제 현황

- 금융위는 5개 국정과제(세부과제 17개)의 주관(공동주관) 부처
  -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감독 개선」 등 금융개혁 핵심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중점 추진
    - \*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1번 / 「금융감독 개선」 → 28번
  - 아울러, 기타 금융개혁과제도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번호	국정과제명	세부과제명
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금융위·중기청 공동주관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벤처창업 투자확대 및 중간회수시장 확충
		M&A 활성화
		핀테크 육성
28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상호금융 감독체계 정비
		유사보험 규제개선
		개별법상 펀드규제 개선
		우체국 예금 등 민간금융회사 간 공정경쟁 기반구축
		금융감독 개선
30	서민 금융부담 완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서민의 과다채무 및 금융애로 해소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등 지원
38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가계부채 연착륙
		회사채시장 원활화
		상호금융·저축은행 건전한 발전
81	개인정보보호 강화 *금융위·행정부·빙통위 공동주관	공공부문·금융·의료·통신 등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실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추진

# 2. 국정과제 추진 실적 및 성과

-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1번 과제)
  - (자본시장 활성화) 「거래소 시장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7월) 하고, 코넥스 기본예탁금 인하(3억원→1억원) 등 활성화 대책 추진
    - 코스닥 ‘기술상장특례’ 기업이 대폭 증가\*하고, 코넥스 일평균 거래대금도 3배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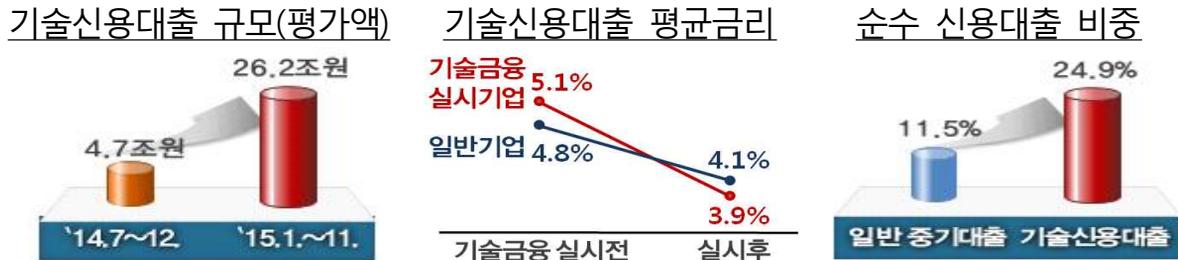
\* 연평균 상장기업 : ('05~'14) 1.5개 → ('15) 12개

\*\* 코넥스 일평균 거래대금 : ('15.1) 7.5억원 → ('15.12) 23.1억원

- (기술금융) 기술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15.6) 마련 등 질적 내실화 노력도 병행

\* 평가인력 확충, 평가자료 수집 효율화, 평가 전 안내 강화 등

-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28조원을 공급하고, 기술 신용평가 소요기간도 대폭 단축(('15.4)21.3일 → ('15.11)9.8일)



- (핀테크 육성) 핀테크산업 진입장벽 완화, 각종 규제 정비,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한 핀테크 생태계 육성 등을 추진

- 핀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등 혁신적 서비스 지속 출현



-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15.11),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등 '15년 실적을 기반으로 '16년에도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현 기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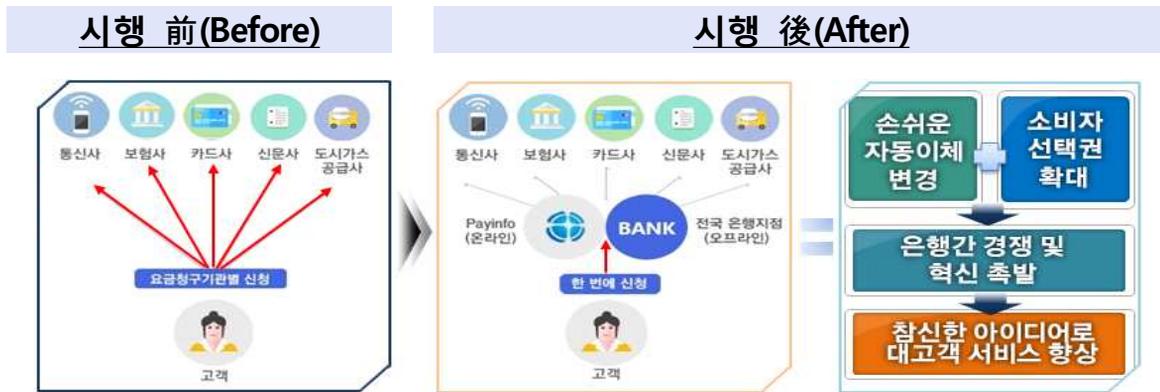
- (M&A 활성화) PEF 등 잠재적 매수주체의 M&A 시장참여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내 M&A펀드 규모 확대

- M&A거래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M&A 건수도 증가 추세

\* '15년말 국내 M&A 거래규모 총 60조원 예상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28번 과제)

- (상호금융 감독체계 정비) 금융위, 행자부 등 5개 부처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15년 4회 개최)를 통해 규제차익 해소
  - \* 비조합원 대출한도 동일화, 상호금융조합 외부감사 확대, 동일인대출한도 상향 등
-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온라인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 도입
  - 조회·해지서비스 개시('15.7) → 자동납부 변경서비스 개시('15.10)



- (금융감독 개선) 관행적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은행의 보수적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지스템 개편
  - \* 종합검사 횟수(회) : ('13) 34 → ('14) 17 → ('15) 15 → ('16) 10 → ('17) 원칙적 폐지
  - 아울러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430여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3,500여건의 건의를 접수하고, 이 중 약 46% 수용

□ 서민 금융부담 완화 (30번 과제)

- (서민금융지원 강화) 4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231만명(약 22.0조원, '15.12)을 지원하고 금리 인하(1.5%p), 맞춤형 상품 도입 등 추진
  - \*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뀌드림론
  -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34.9% → 29.9% 내외)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15.6)
-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을 통하여 '15.12월까지 47.4만명의 채무를 조정하고, 3.3만여명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38번 과제)

- (부채관리)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 엄정한 기업 구조조정\*\* 등 기업부채 관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확보

\* '15년말 분할상환 39.0%/고정금리 35.9% → 기존 '16년말 목표(30%) 달성

\*\*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대기업 54개사, 중소기업 175개사(총 229개사, 전년 대비 약 40%증가) 구조조정 추진

- (건전성관리) 엄격한 관리감독\*에 힘입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수익성 등 영업력도 회복

\* (저축은행) 부적격 대주주 즉시 퇴출, (상호금융) 여신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등

- 저축은행은 7년만에 흑자전환 하였으며,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최저치 달성('09말 3.8% → '15.9말 2.2%)

□ 개인정보보호 강화 (81번 과제)

- (실태점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15.3.10)」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및 실태 점검\* 지속

\* '15년 중 수탁업체 정보관리 실태점검(527개사), 금융전산 안전진단(277개사)

- (제도정비)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규정 등 법·제도 개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15.3월)및 하위법령 개정(15.9)

### 3. 관련 입법 현황

- '15년 금융위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총 9개 제·개정 필요 법안을 모두 既발의하여, 5개 법안 개정 완료

법률명	국정과제 내용	진행현황
자본시장법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완료
	M&A 활성화 등(M&A매수주체의 시장 진입장벽 해소)	완료
	M&A 인센티브 확대(M&A관련 신용공여 제한 완화)	소위 계류
대부업법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완료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서민금융 총괄기구 신설근거 마련	소위 계류
상호저축은행법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기반 마련	소위 계류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	소위 계류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 강화	완료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권리구제·제재강화	완료